

2007.6.25(월) 경제정책조정회의(16:00~17: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정책과제 세부내용

2007. 6.25(월)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노동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	금융감독위	문화재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 목 차 〉

I. 중소기업·벤처투자 및 금융 인프라 혁신 1

1. 상호저축은행의 벤처펀드 출자허용 3
2. 보험사 및 은행의 벤처펀드 15%이상 지분소유 금지완화 4
3. 국책은행과 중소기업연기금의 벤처펀드 공동출자 프로그램 마련 ... 5
4. 창업초기 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신규펀드(1조원)
 구성 6
5. 전문 경영인의 신·기보 연대 입보 완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
 전문기업인의 부담을 경감 7
6. 임원에 대한 금전·실물자산 대여행위 금지의 예외 명확화 8
7. 중소기업 대출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 선진화 9
8. 소규모 합병제도 적용요건 완화 11
9. 간이합병제도 적용요건 완화 12
10. 주식교환 및 합병절차 간소화 적용대상 확대 13

II. 공장설립 및 입지제도 개선 15

1. 계획관리지역내 소규모공장 설립의 일반적 허용 17
2. 계획관리지역내 소규모공장설립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19
3. 상수원보호를 위한 개별공장 입지규제 합리화 추진 ... 20
4. 농업용저수지 상류방향에서 개별공장입지 완화 21
5. 수도권(성장관리지역)에서 외투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기간 연장 23
6.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공장 신·증설
 허용업종 확대 24
7. 수도권내 대기업 공장이전 허용업종 확대 25
8.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원활한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추진 26

9. 시·군별 농공단지 조성 지정면적 확대	29
10. 농업진흥구역내 농수산물 가공시설 면적제한 완화	31
11. 관광활성화를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숙박시설 바닥면적 제한 확대	32
12.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 허용업종 완화	34
13. 벤처기업집적시설내 공장등록 면적 확대	36
14. 반월 국가산업단지 도시공원내 행위제한 완화	37
15. 문화재발굴에 따른 보존지역의 용적률 완화	39
16. 산지전용시 '계획상의 도로' 공동사용 허용	41
17. 임업진흥권역 대체지정 사유 확대	42
18. 보안림 해제사유 확대	43
19. 공장설립지원센터의 One-Stop 서비스를 위한 재정지원	44

Ⅲ. 인력 및 산업안전 제도개선 47

1. 외국인 고급기술인력을 위한 국적취득절차 간소화	49
2. 외국인력 도입절차상 전자사증 적용대상 송출국가 확대 추진	51
3. 외국인 근로자 출국에 따른 근로공백 최소화	52
4. 외국인력 Pool DB 정보에 대한 관리 개선	53
5. 산업단지내 직장보육시설 지원 요건 완화	54
6.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에 기숙사 포함	55
7. 중소기업 재직 공고 졸업생에 대한 입영연기기간 연장	56
8. 청년 실업자 대상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시행기간 연장	58
9. 해외자원개발 전문인력 확충	60
10. 산재승인 결정시 근로자의 과거 상병에 대한 관리개선	62
11.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산업안전 성능검사 제도 개선	63
12. 산재예방기관 운영에 대한 사업주 참여 확대	64

13. CLEAN 사업의 「지역별 목표할당제」 개선	65
14. 외국인근로자 사후관리 개선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확충	67
15. 장기 재직 근로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개선	69
16. 중소기업인력구조고도화 사업 지원대상 확대	70
17. 구직자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정보제공 강화	72

IV. 기업과세 합리화 73

1. 기술지주회사의 배당수익금액 익금불산입을 상향조정	75
2. 산학협력단이 지급하는 대학교수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76
3. 산학협력단의 기술지주회사 주식소유한도 예외 인정	77
4.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펀드 출자에 대한 세제지원	78
5.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완화	79
6.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	80
7. 항공화물 유치 활성화를 위한 재수출면세 대상 확대	81
8. 관세 가격신고제도 간소화를 통한 물류흐름 개선	83
9.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범위 확대	84
10. 연구개발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범위 확대	85
11. 유상으로 일시수입 되는 금형에 대한 관세면세	86
12.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서비스 비용 손금 산입	87
13.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허용	88
14.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대상 확대	89
15. 개성공단 투자기업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90
16.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열회사 범위 축소	91
17. 매입세액 불공제된 재화의 면세전용시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93
18. 하자물품 보세공장 재반입시 관세 환급제한 완화	94
19. 비상장법인 발행 주식에 대한 투자손실 인정 범위 확대	95

20. 사업자등록 법정처리기간 단축	96
21. 보세공장 원료과세 신청절차 개선	97
22. 법인세 신고기한의 단순화	98
23. 특별소비세 총괄납부 승인절차 간소화	99
24.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기업회계기준 수용	100

V. 물류 인프라 구축 101

1. 모듈 트레일러의 운행방안 마련	103
2. 물류시설 캐노피에 대한 규제 합리화	104
3. 항만공사 사업용토지 보유세경감을 통한 물류비용 증가요인 해소	105
4.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절차 합리화	106
5. 인천공항물류단지의 차량통행 규제 개선	107
6. 항만하역 작업시 정시간외 물품취급통보 의무 폐지 ...	108

VI. 환경규제 개선 109

1. 반도체 기존공장의 구리공정 전환 관련	111
2. 국내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개선	113
3.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제도 개선	115
4.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제도 합리화 방안 마련	117
5. 건설폐기물 처리 신고 중복 개선	119
6. 환경친화기업 지정시 요구되는 배출허용기준 조정 ...	120

VII. 기타 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한 지원방안 ... 121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기간 연장 ...	123
2. 대불산업단지내 전기의 순간정전 방지	124
3. 기업의 자연재해 대비 시스템 구축방안 강구	125
4. 불합리한 수돗물 공급조건 개선	127
5. 경제자유구역내 국내기업에 대한 출총제 예외 인정 ...	128

6. 기술우위 SW 개발자 우대를 위한 정부계약제도 개선	129
7. SW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 개선	130
8. 윈도우 비스타 문제해결 비용의 과도한 IT업계 전가 방지	131
9.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시 면허세 비과세	132
10. 중소기업 사업전환 활성화를 위한 R&D 자금 지원	133
11.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부설연구소 설립신고 허용	134
1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조정제도 개선	135
13. 컨설팅과 중소기업 지원정책 연계시스템 구축	136
14. KS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한 교육비용 부담 완화	138
15. 기술이전시(정부연구소→기업) 경상기술료 방식 활성화	139
16. 기업의 R&D과제를 위한 신규인력 채용시 내부인건비 지급기준 명확화	140

VIII. 기업법제 선진화 141

1. 도산절차상 신규지원자금에 대한 우선순위 인정	143
2. 절대우선원칙(Absolute Priority Rule)	145
3. 자동중지제도(Automatic Stay)	146
4. 신탁법상 신탁대상을 Negative System으로 전환	147
5. 수탁자의 자기집행 원칙 폐지	150
6. 복수 수익자간 이해상충 해결규정 도입	151
7. 건축중인 건물에 대한 담보제도 개선	153

I. 중소기업·벤처투자 및 금융 인프라 혁신

1. 상호저축은행의 벤처펀드 출자허용

<현 황>

□ 상호저축은행의 여유자금 운용대상 및 한도는 현행법령상 금융감독위원회가 감독규정을 통해 확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여유금의 운용방법)상호저축은행은 여유금이 있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해 운용하여야 한다

1. 금감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금감위가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의 예탁
4.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문제점>

□ 상호저축은행의 투자대상 유가증권은 저축은행 감독규정상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으로 제한되어

○ 벤처특별법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벤처펀드*등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의 출자가 불가능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은 민법상 조합으로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 발행주체가 아님

<개선방안>

□ 저축은행은 벤처펀드에 출자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을 완화하여 일정한도* 내에서는 출자가능토록 허용(07년 하반기 저축은행 감독규정 개정)

* 건전성 확보를 위해 총투자한도(예: 자기자본의 10%) 및 종목별 투자한도(예 : 펀드의 10%) 등 보완장치를 마련

2. 보험사 및 은행의 벤처펀드 15%이상 지분소유 금지 완화

<현 황>

□ 은행 및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출자지분 포함)의 15%를 초과하는 주식 소유가 금지

○ 다만, 금감위가 정하는 업종*(은행) 또는 보험업법 시행령**상 규정된 자회사 중 금감위가 승인하는 경우(보험)에는 허용

* 은행업감독규정에서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간투법상 투자회사업 · 투자자문업 · 사모투자전문회사업 등을 규정

** 보험업법 시행령에서는 보험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의 종류를 열거 (영§59②)하고 있음(자산유동화회사 · 부동산투자회사 · 사회기반시설사업 등)

<문제점>

□ 15%이상 출자할 수 있는 예외 대상에 벤처펀드가 빠져있어 안정적인 벤처투자재원 확보의 걸림돌로 작용

<개선방안>

□ 은행 · 보험의 경우 금감위 승인을 얻으면 개별 벤처펀드의 15%이상 지분 소유도 가능하도록 변경

① 은행의 경우 보험과 달리 법상에 금감위의 승인절차가 없으므로 은행법을 먼저 개정하여 승인절차를 마련후 허용(08년)

② 보험사의 경우 승인절차가 있으므로 시행령 개정시 승인가능 회사에 벤처펀드를 포함(07년 하반기)

3. 국책은행과 중소연기금의 벤처펀드 공동출자 프로그램 마련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61개 연기금이 운용중이나 국민연금 등 일부 연기금만 벤처펀드(창투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에 투자중

* 연기금의 벤처펀드 투자 현황(억원)

	05년 투자액	06년	
		투자액	투자연기금
창업투자회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1,183	906	국민연금, 영진위, 군인공제회, 지방 행정공제회, 교원공제회
신기술투자사업조합	262	721	국민연금, 군인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개선방안>

- 국책은행이 연기금과 포괄적 업무협약을 맺고 연기금의 투자 동참을 지원하는 방안 추진*

* 예) 산은·기은·중소연기금이 투자한도 및 참여비율 등에 대한 상호 합의를 거쳐 capital call 등의 형태로 중소연기금이 투자 실행

- 벤처캐피탈 협회를 통해 참여의사가 있는 중소연기금을 파악하고 국책은행이 당해 연기금과 협의하여 세부 방안 마련

<참고> 산은·기은의 벤처펀드 투자현황

- '06년 총 20개의 벤처펀드(투자조합)에 372억원을 투자 ('06년, 억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계
• 한국벤처투자조합	50 (1개)	50(2개)	100(3개)
• 창투조합	207(14개)	15(1개)	222(15개)
• 신기술 투자조합	30 (1개)	20(1개)	50(2개)
계	287(16개)	85(4개)	372(20개)*

* 06년 말잔 : 1,311억원(56개)

- '07년 벤처펀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년도 지원액보다 128억원을 증액 ('07년도 목표 : 500억원)

4. 창업초기 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신규펀드(1조원) 조성

<현황>

□ 중소기업 대출은 05년말 이후 증가세가 지속

* 은행권 중기대출 증감액(조원, 전년대비) : (04)6.9, (05)11.0, (06)43.5 (07.4월까지) 22.2

<문제점>

□ 중기대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신용도가 높은 기업에 집중*되고 있어 창업초기 기술력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

* 최근 은행들은 신BIS 시행에 대비하는 등 기업 신용위험에 대한 민감도가 커진 것으로 추정

<개선방안>

□ 창업초기 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가칭 ‘글로벌스타 육성펀드(1조원)’ 신규 조성(산업은행, 07년 하반기)

- (지원방식) 대출, 출자, 회사채 인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 (지원대상) 창업초기 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영위 기업 등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을 선별 지원 (창업후 7년미만 기업 우대)
- (우대금리 적용) 조달비용이 낮은 별도재원(보유 주식 매각 이익 등)을 활용함으로써 대출, 회사채 인수시 우대금리 적용(현행 실행 금리에 비해 최고 1%p 수준 금리 우대)

5. 전문 경영인의 신·기보 연대 입보 완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인의 부담을 경감

<현 황>

□ 신·기보 보증시 보증부실을 막기위해 경영실권자(전문경영인 포함) 등에 대한 연대입보제를 운영중

- 다만, 3% 미만 지분을 소유한 벤처기업 전문경영인은 연대 입보대상에서 제외하며, 특히, 기보의 경우 지분분산, 기술력 등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연대입보 면제

* 지분분산 : 1인지분 30% 미만

기술력·재무건전성 요건 : 기술평가등급 A 또는 재무등급 AAA이상

<문제점>

- 벤처 창업자의 68%가 5년 이내에 실패하는 등 사업리스크가 높으나 재기를 하려해도 연대보증으로 인해 금융 이용 곤란
- 특히, 벤처기업 전문경영인의 연대보증 입보 부담으로 전문 경영인 경영문화 확산에 애로

<개선방안>

□ 연대입보 면제 조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인의 부담 경감 (07년 하반기, 신·기보 내부 규정 개정)

① 전문경영인의 입보대상 기준 완화

: (현행) 3% →(개선) 5% 미만 주식소유하는 CEO

② 재무등급을 1단계 하향조정(향후 추가 확대 검토)하여 연대 입보 면제대상 우수벤처기업의 범위를 확대

현행 요건	개선	대상기업수
일반기업 : AAA 등급	AA 등급 이상	149개 증가
외감기업 : AA 등급이상	A 등급 이상	101개 증가

6. 임원에 대한 금전·실물자산 대여행위 금지의 예외 명확화

< 현황 >

- 현행 증권거래법은 임원에 대한 금전 및 실물자산 등의 대여 행위를 금지

* 근거법령 :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9

< 문제점 >

- 첨단산업의 경우 핵심인력의 유치가 필수적이며, 이들에 대해 임원급의 대우와 함께 주거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
 - 특히 우수인재들이 지방근무를 기피해 사택 또는 임대주택 제공 여부가 이들 인력의 지방기업 근무의 중요한 변수
- 그러나 현행법하에서는 석박사급 핵심인력이 임원으로 승진하면 기존에 분양받은 사원 임대아파트도 반납해야 하는 실정

< 개선방안 >

- 복리후생차원의 사원주택 또는 임대주택 대여는 증권거래법령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가 아님을 명확화(대책발표후 즉시, 증권거래법 유권해석 사항)
 - 증권거래법은 회사 재산의 부당한 유출의 우려가 있는 금전·실물자산의 대여를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 회사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임원 등에게 대여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회사 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가져올 소지가 없으므로 금지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음

* '07.2월 충남북구상공회의소의 질의에 기 유권해석한 바 있음

7. 중소기업 대출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 선진화

<현황>

-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은 05년말 이후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년들어 증가폭이 확대

* 은행권 중기대출 증감액(조원, 전년대비) : (04)6.9, (05)11.0, (06)43.5 (07.4월까지) 22.2

<문제점>

-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대내외 여건(환율, 경기 등)과 최근 설비 투자 수요를 감안할 때, 중기 대출 증가는 바람직한 측면

- 다만, 최근 중기대출의 빠른 증가세는 금융시장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으로 내재

* 중소기업대출 증감율(전년대비 %) : (03)18, (04)2.4 (05)5.2 (06)17.6

- 또한 최근 일부 중기대출은 기업 운용·설비투자가 아니라 부동산 구입 등 용도외로 유용된다는 지적

- 신용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 대출채권 유동화가 가능하나 이를 제약하는 일부 제도 잔존

- 신탁과 새마을 금고는 ABS 발행이 금지되어 있으며,

- 하나의 SPC에서는 유동화가 한번만 가능*하여 매번 유동화 할 때 마다 SPC를 설립(시간·비용 소요)해야 함

* SPC내 한 유동화에서 부실이 발생할 경우 동일 SPC내 다른 유동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제한

<개선방안>

- 업종별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능력이 강화되도록 지원

* (例) 업종별 전망 정보 : 중기청 등 → 은행연합회 → 은행
업종별 대출·연체율 정보 : 은행연합회 → 은행

- 대출금의 용도의 유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월별 점검 감독체계를 운영*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

* 금년 5월부터 중소기업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시장의 전반적 리스크를 모니터링하는 금융동향점검회의(금감위)를 운영중

- 중소기업 대출의 신용위험을 분산하고 금융기관의 신규자금 확보가 용이할 수 있도록 ABS 활성화(07년 하반기, 자산유동화법 개정)

-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ABS 발행을 허용
- 하나의 SPC를 통해 반복적으로 유동화할 수 있는 포괄 유동화를 허용

*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출채권이 SPC 내에서 발행건별로 구분관리가 될 수 있도록 보완방안(예 : 유동화 건별로 구분해서 신탁)을 마련

- 중소기업 대출채권 유동화를 위해 중소기업 회계투명성 제고, 기업CB 활성화, 신용평가능력 제고 등 지속 추진

8. 소규모합병제도 적용요건 완화

<현 황>

- 상법상 소규모합병시, 존속회사의 경우 이사회 승인으로 주주 총회 승인을 같음하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불인정하여 합병절차를 간소화

* 소규모합병 인정요건 :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을 초과하지 않고, 합병교부금이 존속회사 순자산의 2% 이하인 경우

<문 제 점>

- 현행 소규모합병제도의 인정요건 (주식 5%, 순자산 2%)이 지나치게, 제한적

○ 대규모 기업이 소규모 기업을 합병하는 데는 활용 가능하나 시너지 확대를 위한 유사 규모의 기업간 M&A에는 적용에 어려움

<개선방안>

-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소규모합병제도 인정요건을 신주 발행은 발행주식 총수의 5%에서 10%로, 합병교부금은 순자산의 2%에서 5%로 완화하여 제도의 활용도 제고

* 미국의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및 일본의 신회사법에서도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하인 경우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생략 가능

* 벤처특별법에 특례 신설

9. 간이합병제도 적용요건 완화

<현 황>

- 상법상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간이합병시,
소멸회사의 경우 이사회 승인으로 주주총회 승인을 같음하여
합병절차 간소화

* 간이합병 인정요건 : 소멸회사 총주주의 동의를 있거나 존속 회사가 소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9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문제점>

- 현행 간이합병제도의 인정요건(의결권 유무와 관계없이 소멸 회사 주식 90%이상 소유)은 지나치게 제한적
 - 주총의 결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소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시킬 필요

<개선방안>

-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간이합병제도 인정요건 완화
 - 소멸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90%이상에서 총 발행주식수 중 의결권 있는 주식 90%이상으로 완화
- * 미국의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에서도 간이합병 제도의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90%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규정
- ** 벤처특별법에 특례 신설

10. 주식교환 및 합병절차 간소화 적용대상 확대

<현황>

- 그간 벤처기업의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기업간 부분적 주식교환 허용 및 과세이연, 합병 및 영업양수도 절차 간소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 ('02.8, '04.1)

<문제점>

- 벤처특별법은 주식교환 및 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제도 적용대상을 비상장벤처기업으로 한정함에 따라
 - 성장 정체를 맞이한 기업들의 경영전략으로서의 M&A를 벤처기업의 재도약 기회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제약

<개선방안>

- 현행 벤처특별법의 주식교환 및 합병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 적용대상 기업 범위를 현행 비상장벤처기업에서 비상장 창업기업(설립후 7년이내)으로 확대

** 필요조치사항 : 벤처특별법 관련규정 개정

Ⅱ. 공장설립 및 입지제도 개선

1. 계획관리지역내 소규모공장 설립의 일반적 허용

<현황>

- 관리지역에서 1만㎡미만 소규모 공장의 설립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
- 따라서, 1만㎡미만 소규모공장 설립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 경우에 가능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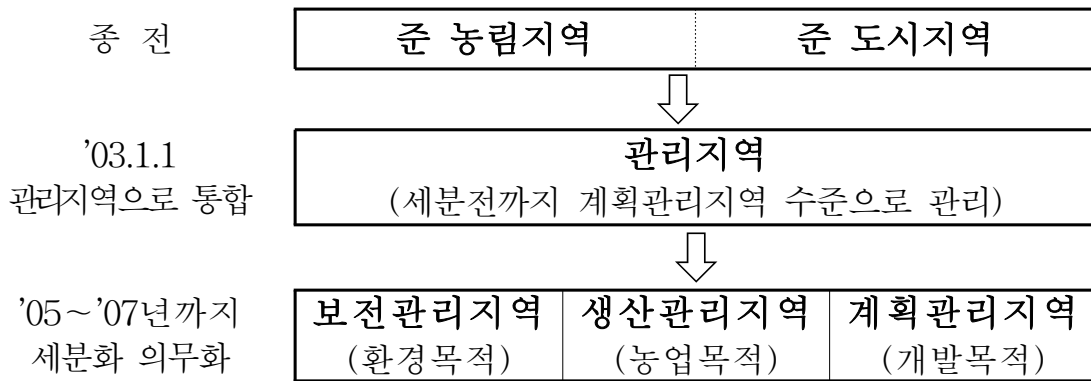
- 많은 자치단체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어,
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설립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는 실정
- * 07.1월 현재 71% 이상의 자치단체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음
(중소기업 중앙회)

<개선방안>

- 관리지역 중에서 개발용으로 사용가능한 계획관리지역에서 소규모 공장설립을 법령에 의해 일반적으로 허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 다만,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서 제한
- (현행) 법령에서 제한후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Positive 방식) →
- (개정) 법령에서 허용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을 통해 금지(Negative 방식)

<참 고> 관리지역 현황

- 우리나라 전 국토는 도시지역(15.8%), 관리지역(24.6%), 농림지역(48.1%)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11.5%)으로 구분
- 관리지역은 친환경적이면서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농림목적),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2007년 말까지)를 의무화
 - 세분화 시기 : (수도권 및 광역지자체) '05년까지, (기타지역) '07년까지



< 보전 · 생산 · 계획관리지역 비교 >

분 류	정 의	개발가능성(공장)
보전관리	자연환경보호 등을 위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	공장건설 불가
생산관리	농림어업 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	도정·식품공장만 가능
계획관리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공장건설 가능

-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조례개정을 통해서만 공장설립이 가능하며,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난개발 방지를 위해 사전환경성 검토·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엄격한 사전절차 실시
- 지난해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06.9월)에서 이러한 사전절차를 면제하는 ‘공장입지유도지구’(50만㎡이하) 제도 도입(07.10월 시행)

2. 계획관리지역내 소규모공장설립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현 황>

□ '05.9월 관리지역 내에서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으나

-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에 대해서도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문제점>

□ 소규모 공장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공장설립에 애로 발생

-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심의안건이 2~3건 이상 있어야 소집되므로, 소규모 공장설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데 예측치 못하는 많은 시간이 소요

*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2조)

-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지방의회 의원, 행정기관 공무원, 도시관련분야 전문가 등 15인~25인(위원장 포함)으로 구성

<개선방안>

□ 계획관리지역내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설립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개정)

3. 상수원보호를 위한 개별공장 입지규제 합리화 추진

<현 황>

- 상수원보호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광역 및 지방상수원), 수변구역에서는 개별법률*에 의해 모든 공장설립이 금지

* 「수도법」,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 또한, 상수원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산업입지통합지침’(건교부-환경부 통합지침)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상류방향*에도 모든 공장설립을 금지

※ 통합지침에 의한 입지금지 지역(산업입지의개발에관한통합지침 제36조)

- 상수원보호구역 상류방향 20km/10km(광역상수원/지역상수원)
-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 15km/하류방향 1km 등

<문제점>

- 상수원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구체적인 근거없이 공장설립을 금지하고 있다는 논란 지속 제기
- 오·폐수를 배출하는 축사, 근린생활시설은 허용하면서 모든 공장(비공해 업종 공장 포함)만을 금지하는 것은, 상수원보호 목적도 달성하기 어려우면서 공장에만 지나친 규제로 작용할 우려

<개선방안>

- 법률상 구체적인 근거 및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비공해 공장에 대한 합리적인 상수원 상류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전문기관 연구용역(07.6~08.6월) 실시후 08년까지 마련

4. 농업용저수지 상류방향에서 개별공장입지 완화

<현 황>

□ 농업용저수지는 농어촌의 용수확보를 위해 농업기반시설로 관리되며, 전국에 17,699개(07.3월현재) 분포

□ 05.12월부터 농업용저수지의 수질보호를 위해 상류방향 5km 지역에서는 모든 개별공장의 입지를 금지(산업입지의개발에 관한통합지침 제36조)

※ 지난해 9월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서 산업단지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농업용저수지 상류방향에 대한 입지를 완화(5km→2km)

<문제점>

□ 공장이 조밀하게 입지하는 도시지역·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에서, 농업용저수지 보호만을 위해 상류방향으로 5km내 모든 공장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

* 나머지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공장입지가 원칙상 불가

○ 오·폐수를 배출하고 있는 축사, 주택근린생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공장만 입지를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오염통제 효과도 달성하기 어려움

□ 05.12월 이후 급격한 농업용저수지 상류방향내 모든공장의 설립 금지로, 기존공장의 증설도 불가

○ 수요증가 대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도 못하고 있는 실정

- * 사례 : 충남 아산소재 반도체 패키지를 제조하는 H기업은 01.8월 농업용 저수지 상류(2.1km)방향에 첨단제조공장을 설립하여 운영중
 - 그러나, 동기업은 최근 제품의 수요증가 및 경쟁력 유지를 위해 공장증설 투자를 추진하였으나, 05.12월이후 입지규제강화로 증설투자가 불가능한 상황

<개선방안>

□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농업용저수지 상류방향 입지 제한을 완화(산업입지통합지침 개정)

* (현행) 상류방향 5km → (완화) 상류방향 2km

※ 농업용수 저수지 상류유역 용도지역 지정현황

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16,175 ¹⁾ (100%)	1,159 (7.2%)	4,735 (29.3%)	10,281 (63.5%)

주1) 17,699개중 광역시(914) 및 자료미제출(610개소) 제외

5. 수도권(성장관리지역)에서 외투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기간 연장

<현 황>

-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성장관리권역 산업단지 내에서 25개 첨단업종 외국인투자 기업의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을 0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

*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인 기업

<문제점>

- 외투기업의 투자허용기간이 금년말까지 한정됨에 따라, 투자환경 불확실성으로 지속적인 외국기업 투자유치 곤란
 - 기 투자협정을 체결한 외국기업 투자이행에 대한 불신초래
 - 기업이 투자대상국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투자기간 제한으로 지자체의 투자유치 상담 기회마저 차단할 우려
 - 또한, 조성 중인 외국인 임대전용 산업단지*의 공동화 가능성

* 화성, 평택 등 22만평 2,660억원 투자(07년~09년)

<개선방안>

- 25개 첨단업종 외투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기간 연장을 추진 (예 : 2010년까지)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호 별표2 개정

6.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공장 신·증설 허용업종 확대

<현 황>

-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행자부)」 시행령 제15조상 61개 업종에 대해 반환 공여구역(예: 동두천) 주변지역에서 공장 신설을 허용
 - 한편 주한 미군기지 이전대상지(평택)에 대해서도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국방부)」에 의거, 61개 업종에 대해 공장 신설을 허용

<문제점>

- 반환공여구역(동두천)과 미군기지 이전 대상지(평택)의 지역 산업 구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제정된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에서는 지역산업에 대한 고려가 미흡 (지역 주력산업이 누락되는 문제 발생)
 - * 경기북부지역 주력산업 : 섬유, 피혁, 식품, 낙농제품제조업 등
- 특히, 한미 FTA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과의 연관효과가 큰 낙농제품제조업은 시설확충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나 허용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대규모 공장의 조성 불가

<개선방안>

- 경기도 북부지역의 주력산업인 ‘낙농제품제조업’을 공장 신설 특례 업종에 추가
 -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별표4 개정

7. 수도권내 대기업 공장이전 허용업종 확대

<현 황>

- 현행 법령상 과밀억제지역에서 성장관리지역으로 이전이 허용되는 대기업 업종을 8개로 제한

* 과밀억제·자연보전지역에서 성장관리지역으로 이전허용 대기업 업종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별표 2)

《8개 허용업종》

- ① 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30013)
- ②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31103)
- ③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제조업(32111)
- ④ 전자축전기 제조업(32193)
- ⑤ 유선통신기기 제조업(32201)
- ⑥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32202)
- ⑦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32300)
- ⑧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35310)

<문제점>

- 상기 이전허용 업종은 주로 첨단산업이나, 현행 허용업종은 10대 성장동력 산업 등 미래 유망산업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개선방안>

- 금년 중 업종 추가여부 및 추가허용 업종에 대한 검토 추진

8.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공장·학교 등)의 원활한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추진

<현 황>

- 정부·지자체는 균형발전 및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해 기업·학교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지원하도록 규정
 - 정부(산자부장관)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 산업발전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산집법 제26조)
 - * 산집법 제26조(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산업발전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정부(건교부장관)는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을 마련(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
 -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
건설교통부장관은 --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8. 수도권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대지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지방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해 세제감면(법인세, 취득·등록세) 및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중
 - * 지방이전기업 지원제도
 - 50인 이상 이전기업에 대해 부지매입비, 시설투자비, 고용·훈련비 등 일부지원
 - 세제지원 : 법인세 감면(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지방세 감면(취·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감면) 등

<문제점>

- 공장·학교의 지방이전시 기존부지의 매각대금으로 이전 비용의 충당이 필요하나, 수도권 소재 지자체들은 세수감소, 용도변경에 따른 부작용 등을 이유로 지방이전에 비협조
- 오히려 일부 지자체는 새로운 의무부과 또는 규제강화로 지방이전 추진을 저해

【사례 1】 군포시 L기업 : 10년동안 기존공장을 처분하지 못함

- L기업은 경기도 군포시(일반공업지역) 소재 257,180㎡(77,797평) 규모의 공장을 1996~2006년 기간동안 전북 전주시 산업단지로 이전을 완료
- 기존부지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무산됨
 - 1997년에는 일반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줄 것을 군포시에 요청하였으나, 군포시는 이를 거부
 - 2002년에는 건교부 제안으로 토지공사에서 선매입 후개발 방식으로 부지매입을 추진하였으나, 가격이 맞지 않아 협상이 결렬
 - 2004년에는 자체매각을 추진하였으나, 군포시에서 공장부지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04.7월)하여 부지매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

【사례 2】 안양시 D기업 : 이전비용 마련에 어려움

- D기업은 경기도 안양시(일반공업지역) 소재 39,000㎡(12,000평) 규모의 공장을 충북 충주 지방산업단지로 이전을 추진(08년 하반기 완료계획)하고 있으나, 안양시는 “이전한다면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겠다”는 등 이전에 반대
- 기존공장 매각이 어려울 경우 약 1천억원이 소요되는 이전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애로가 발생

【사례 3】 서울시 D대학 : 기존 학교시설 해제 어려움

- D대학은 서울소재 대학교를 경기도 용인으로 이전을 추진
- 학교 부지의 매각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학교시설)의 해제가 필요하나, 서울시는 해당부지가 사립대학이지만 공공시설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용도폐지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전추진에 장애

<개선방안>

□ 일정규모 이상(예 : 3만㎡이상)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지방이전시, 기업·사립학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가 중앙정부(건교부 등)와 협의하여 「중전대지 활용계획」을 수립

○ 동 계획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토록 의무화(관계법령 개정)

* 법령반영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조속히 확정

9. 시·군별 농공단지 조성 지정면적 확대

<현황>

- 농촌지역의 취업기회를 확충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84년~14년까지 400개소 농공단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
 -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1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원
 - 07.6월까지 현재 345개 농공단지를 지정
 - 농공단지 조성비는 시·군의 재정자립도, 공업집적도, 공장면적 등을 종합평가하여 평당 3~10만원 차등지원
 - * 농공단지는 용지취득비, 단지시공비, 부대시설(진입도로 등) 등 단지 조성비 정액 지원
 - ** 산업단지는 조성비를 지원하지 않는 대신, 기반시설(진입도로·폐수처리 시설 등)을 지원
- 농공단지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시·군별 지정가능면적을 최대 133만m²(원칙상 100만m²이나, 수요증가시 33만m² 추가)로 제한

<문제점>

- 기업의 수요가 높은 시·군에서 농공단지 설립제한으로 인하여, 기업이 개별입지하게 되므로 난개발 문제 발생
 - 07.6월현재 농공단지 조성면적이 100만m²를 초과한 시·군은 전국적으로 7개 시·군
 - * 강원(원주), 충남(예산, 아산, 서산), 전북(김제), 경북(영주), 경남(김해)

<개선방안>

□ 기업수요가 높은 농·어촌 지역의 농공단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FTA 등을 계기로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공단지 지정면적 한도를 확대(농공단지 통합지침 개정)

○ 농공단지 지정면적 확대

- (현행) 최대 133만 m²(원칙 100만 m², 추가 33만 m²) →
(확대) 최대 166만 m²(원칙 100만 m², 추가 66만 m²)

10. 농업진흥구역내 농수산물 가공시설 면적제한 완화

<현 황>

-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을 지정(농지법 제30조)
 - 농업진흥구역은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공장 등 다른시설의 부지면적을 엄격히 제한
 - 농업진흥구역내 설치시설 부지면적 제한
 -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 3,000㎡미만 가능
 - 미곡종합처리장 : 30,000㎡미만 가능

<문제점>

- WTO, FTA협상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의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이 필요하나,
 -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은 부지면적 3천㎡ 미만의 소규모 시설의 설치만 허용하여, 경쟁력있는 대규모 가공시설 설치에 제약

<개선방안>

- 농업진흥구역 안에서의 농수산물 가공 및 처리시설 설치가능 부지면적을 1만㎡ 미만으로 상향 조정

* 「농지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 개정

11. 관광활성화를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숙박시설 바닥면적 제한 확대

<현황>

-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는 수산자원의 보호·육성과 주민생활 영위에 필요한 건축물 또는 시설 이외에는 설치를 제한
 -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설치가능한 주요시설(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6)
 - 농업·임업·어업용으로 이용하는 시설
 - 농어가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등
 - 관광단지 또는 관광농원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바닥면적 660㎡이하의 숙박시설 등

<문제점>

-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 관광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관광지·관광단지에 설치가능한 숙박시설 바닥면적이 660㎡으로 제한되어,
 - 경쟁력있는 숙박시설 설치가 어려운 실정
- 최근 전남도에서도 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내 관광단지·관광농원에 설치되는 숙박시설에 제한(바닥면적 660㎡이하)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 발생

* 전남도 섬개발 프로젝트 : 05~15년까지 4개 클러스터(40개섬) 개발

<개선방안>

- 수산자원보호구역내 관광지·관광단지에 설치가능한 숙박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660㎡ → 1,000㎡,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참 고> 수산자원 보호구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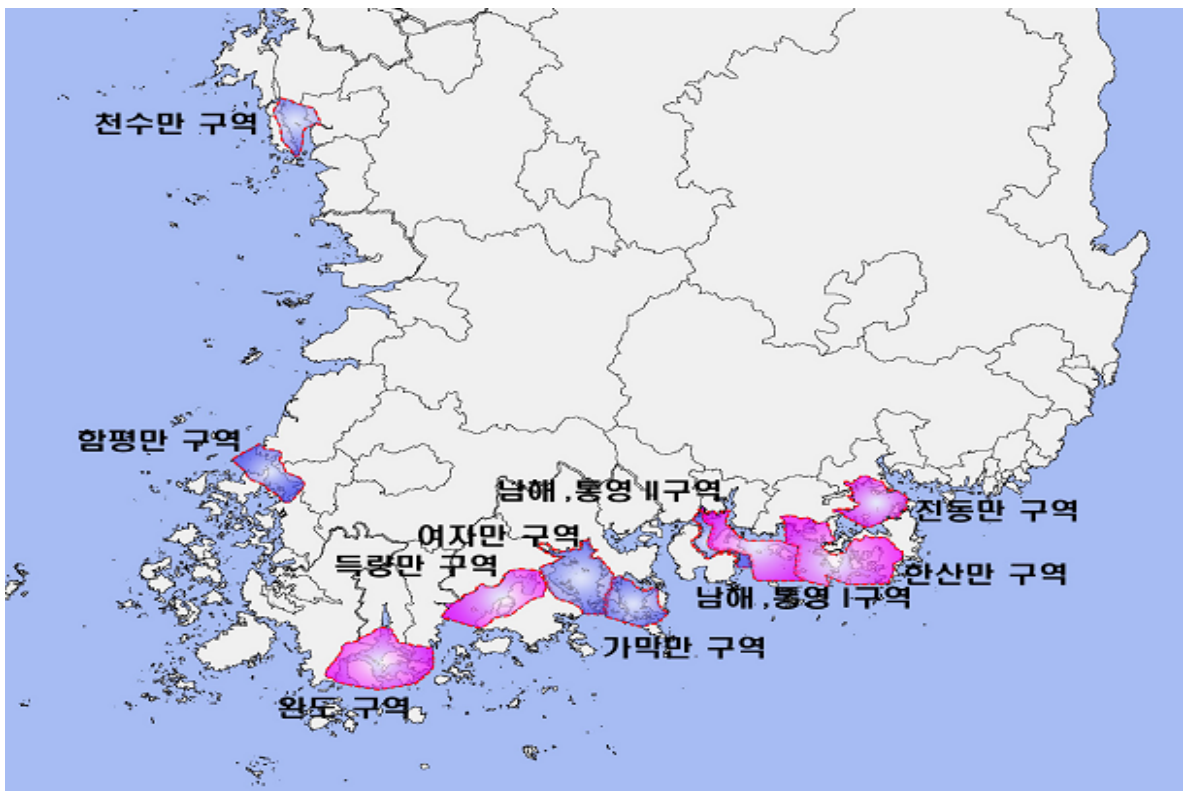
□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해 경남, 전남, 충남지역의 10개구역*에, 해수면(2,625km²)과 인접토지(1,243km²)를 대상으로 지정

* 수산자원보호구역(10개) : 완도, 득량만, 남해·통영 I, 남해·통영 II, 한산만, 진동만, 함평만, 가막만, 여자만, 천수만

□ 05.4월 토지이용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수면을 중심으로 지정하고, 토지부분을 대폭 축소하는 조정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중

* 07.5월 현재 합리적 조정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기관(KMI) 용역결과를 토지부분의 76%(940.5km²)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 추진중

<수산자원 보호구역 현황>



12.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 허용업종 완화

<현 황>

□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케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벤처기업 집적시설(건축물) 제도 운영중

* 벤처기업 집적시설 현황(07. 5월말 현재) : (지정) 78개, (입주기업) 1,401개

○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대해 취득세·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감면,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면제

□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을 벤처기업과 지식기반 산업을 영위하는 업종*(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제6항)으로 한정

* 지식기반산업 영위업종(4개) :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문제점>

□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업종이 입주대상에서 제외

○ 또한 벤처기업 집적시설도 적격업체 모집이 어려워 집적시설 지정이 취소되는 사례 증가

* 집적시설 수 : (00년)162개 → (02년) 135개 → (04년) 90개 → (07.5월)78개

<개선방안>

□ 첨단지식 산업의 실질적 육성 및 집적시설의 집적화 지원을 위해 입주업종을 확대(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

* (기존) 벤처기업, 지식기반산업 영위 중소기업(조특법시행령§6⑥) → (추가)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영위 중소기업(산집법시행령§6②,③)

<참 고>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 · 취소 현황

지정현황(누계기준)

년 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5
지 정	25	50	101	30	28	17	10	8	14	1
취 소	-	1	13	40	45	23	49	20	13	2
현 재	25	74	162	152	135	129	90	78	79	78

※ '06.12월 기준 집적시설 입주기업수 : 총 1,401개사(벤처기업 703개사 포함)

지정현황(연도별 기준)

년 도	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5
지 정	284	25	50	101	30	28	17	10	8	14	1
취 소	206	22	43	88	18	17	10	5	3	-	0
현 재	78	3	7	13	12	11	7	5	5	14	1

지역별 지정 · 취소 현황

지 역	계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울산	광주	경기
지 정	284	154	5	10	19	8	1	2	68
취 소	206	136	2	8	9	4	1	1	37
현 재	78	18	3	2	10	4	0	1	31
지 역		강원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지 정		2	1	3	-	9	1	-	1
취 소		-	-	2	-	4	1	-	1
현 재		2	1	1	0	5	0	0	0

13. 벤처기업집적시설내 공장등록 면적 확대

<현 황>

□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케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벤처기업 집적시설(건축물) 설치(벤처법 제18조)

* 벤처기업 집적시설 현황(07.5월말 현재)

· (지정현황) 78개, (집적시설내 입주기업) 1,401개사

○ 벤처기업 집적시설 활성화를 위해, 동 건물에 대해 취득세 · 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감면,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

<문제점>

□ 벤처기업 집적시설 내 공장등록은 1,000m²(약 300평) 이하만 허용하여 벤처기업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최근 벤처기업은 제조시설과 R&D기능의 연구소를 보유함에 따라, 벤처기업의 공장등록 면적이 증가추세이나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공장설립 · 제조물 설치 승인 면제, 공장등록 특례 인정

<개선방안>

□ 벤처기업 집적시설내 공장등록 가능면적을 2,000m²까지 확대하여 기업경영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개선(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

14. 반월 국가산업단지 도시공원내 행위제한 완화

<현 황>

- 수도권내 산재되어 있는 이전대상 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안산시 인근에 반월 국가산업단지 조성·분양(1987년 조성완료)
 -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도시공원은 반월 신공업도시 개발당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 당해 공원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녹지구역으로 지정되어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만 설립이 가능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 관리사무소, 진입도로 등

<문제점>

- 반월산업단지내 공원구역이 녹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원 조성사업(각종 운동·교양·조경시설 등을 설치) 추진이 불가하여, 도시계획시설이 장기미집행시설로 방치

<개선방안>

- 도시공원 내에 화단·분수·운동시설 등을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참 고> 반월국가산업단지 주요 현황

□ 입주업체 : 2,764개업체

○ 고용인원 : 89,075명

□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m², %)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 지 구 역
15,374,200 (100)	7,930,960 (51.5)	383,597 (2.5)	2,085,566 (13.6)	4,974,077 (32.4)

□ 반월공단 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 현황

구 분		위 치	면적(m ²)	조성 여부	조성 년도	향후조 성계획
단원구 0 총 : 7개소 -기조성: 2 -조성중: 0 -미조성: 5	시민공원	원곡동 산100번지일원	469,608	조성	1990	2007년 이후
	전망대공원	원시동 산37번지일원	215,589		1989	
	신점공원	신길동 397번지일원	42,117	미조성		
	원시공원 (자연)	원시동 산59번지일원	268,400			
	돌안말공원	성곡동 산78번지일원	112,032			
	무들공원	성곡동 산13번지일원	82,211			
	별망성공원 (자연)	초지동 656번지 일원	71,882		"	
총 계	총 : 7개소 (자연2, 근린5)	1,261,839				

15. 문화재발굴에 따른 보존지역의 용적률 완화

<현 황>

- 개발사업 시행 전·후에 매장문화재 분포여부 확인 또는 매장 문화재 발굴을 위해 문화재 조사 실시(지표조사·발굴조사)
 - 문화재 지표조사는 개발공사 시행전 매장문화재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전조사(99년 도입)
 - 3만㎡ 이상 공사 → 의무적으로 실시
 - 3만㎡ 미만 공사 → 문화재 출토가능성에 따라 제한적으로 실시
 - 문화재 발굴조사는 지표조사결과 또는 사업시행 중에 매장 문화재 발견시, 이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실시
- ※ 1단계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06.9월)
 - 매장문화재 조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 소규모 공장설립(1,322㎡ 이하) 또는 예측치 못한 매장문화재 발견시 조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50%)를 지원
- 발견되는 매장문화재는 박물관·수장고 등으로 이전하여 보관 하거나(이전보존), 현장에서 원형대로 보존(현장보존)
 - * 이전보존 또는 현장보존 여부는 문화재청이 결정(문화재보호법 제62조)
- 개발사업구역내 현장보존하는 문화재가 있는 경우, 당해구역은 개발이 금지

<문제점>

- 사업구역내 매장문화재가 현장보존 되는 경우, 이에대한 보상이 거의 없어 모든 행위제한을 개발사업자가 부담
 - 현장보존되는 토지는 예산으로 모두 매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현실적인 예산제약으로 한계

<개선방안>

- 문화재조사에 따라 사업대상 토지가 일부 보존됨으로써 사업구역이 불가피하게 축소된 경우, 민간 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일부 완화(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
 - 도시지역내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사업(1~3만m² 이상)을 추진할 경우 문화재 발굴지역을 공원 등으로 지정하여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비도시지역에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사업(3만m² 이상)을 추진할 경우에도 문화재 발굴지역을 공원, 완충녹지, 광장 등의 오픈스페이스 면적으로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사업시행자의 손실 보전

16. 산지전용시 ‘계획상의 도로’ 공동사용 허용

<현 황>

□ 산지전용 신규허가(A)시, 이미 허가(B)된 ‘계획상 도로’의 공동 사용을 인정하지 않고, 별도의 진입로 개설을 의무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 이는 B사업이 중단된 경우 A사업이 맹지*로 되는 것을 방지 하고, 산지전용 기간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토록 하기 위함

* 맹지는 지적도상 도로와 접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의미

<문제점>

□ 계획상의 도로를 인정하지 않아 공장설립 비용의 낭비가 초래 되는 경우가 발생

○ 산지를 전용하여 공장설립을 하는 경우, 인접 공장의 진입로 (계획상의 도로)를 공동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상황에서도 별도의 진입로를 의무적으로 개설

<개선방안>

□ 계획상 도로의 사용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일정조건 충족시), ‘계획상 도로’의 공동사용 인정(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 산지전용시 계획상 도로의 공동사용 충족조건

① 종전허가를 받은자가 산지전용을 완료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종전허가 중 계획상 도로 부분의 허가를 분리하여 계획상 도로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명의 변경)

② 계획상 도로를 포함하여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17. 임업진흥권역 대체지정 사유 확대

<현 황>

- 산림청장은 임업의 생산기반 조성과 임산물의 유통·가공시설이 필요한 지역을 ‘임업진흥권역’으로 지정
- 공장설립 등 개발목적으로 임업진흥권역 해제를 추진하는 경우, 당해 기업이 해당 임업진흥권역의 대체지정지를 마련하여 제공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임업진흥지역 관리요령
- 다만, 공유림은 대체지정 예정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체지정이 가능하나, 연접 또는 인근한 경우는 대체지정 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

<문제점>

- 공유림이 대체지정 예정지역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임업진흥권역 지정을 할 수 없어, 대체지정 대상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 공유림을 임업진흥권역으로 대체지정 하는 경우, 일반 개인소유 산림의 대체지정 면적이 감소하므로 기업에게 부담 감소

<개선방안>

- 공유림이 기존의 임업진흥권역과 연접된 경우 또는 일정규모 (일단의 면적 50ha) 이상인 경우는 임업진흥권역으로 대체지정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상지 확보를 쉽게 하고, 개발부담을 완화
- 일정규모 이상 공유림의 임업진흥권역 대체지정 사유
(기존) 임업진흥권역 지정대상 내에 공유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확대) 공유림이 포함되어 있거나 연접하는 경우 및 일단의 면적이 50ha 이상인 경우 대체지정 가능

18. 보안림 해제사유 확대

<현 황>

-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토사의 유출·붕괴 방지, 수원함양, 경관보전 등을 위해 보안림을 지정
- 보안림의 지정해제 사유로서 ‘당해 보안림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이미 설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안림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보안림 관리요령 등

<문제점>

- 보안림 해제를 위한 대체시설 설치가 사실상 금지되어, 법령상 보안림 해제가 불가
 - 대체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인·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를 위해서는 보안림 해제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사실상 대체시설 설치가 제한

<개선방안>

- ‘보안림 기능을 대체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안림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합리화

* 보안림관계규정 개정

19. 공장설립지원센터의 One-Stop 서비스를 위한 재정지원

<현 황>

- 공장설립지원센터는 '97년 2월 개소하여 본사를 포함한 11개 센터를 구축하고, '06년말 현재까지 11,257건의 공장설립 무료 대행지원을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
- 제1차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06.9)에서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지위·기능·시스템을 확충하여 공장설립절차를 실질적으로 일괄 대행하는 창업·공장설립에 관한 종합서비스 기관으로 확대 개편기로 함

<문제점>

- 공장설립 일괄대행체제 구축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시행이 필요하나 일부 방안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 미흡으로 사업 지연
- 공장설립지원센터가 민원인을 대신하여 각종 공공기관 발행 서류를 On-line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산집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통해 추진 중(법제처 심사 중)이나,
- 지자체 등의 관련기관 전산시스템을 연결하여 신청에서 승인 까지 공장설립 관련 모든 업무를 On-line으로 처리 하는 방안(공장설립 민원행정 온라인시스템 구축)은 재정부족으로 미시행

<개선방안>

- 공장설립지원센터가 실질적 One-Stop 일괄대행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공장설립관리정보망(FEMIS)내 공장설립 민원행정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배정
 - 08년 : 공장설립 민원행정 온라인시스템 구축 방안 수립
 - (09년) 시범구축 → (10년) 전국확대 → (11년) 사업의 안정화
- ⇒ 이를 통해 기 운영중인 공장설립관리정보망을 통해 공장설립 승인 절차가 이루어져 공장설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기업 규제완화 효과 제고

Ⅲ. 인력 및 산업안전 제도개선

1. 외국인 고급기술인력을 위한 국적취득절차 간소화

<현황>

- 현재 외국 고급기술인력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석·박사급 인력에 대한 출입국상 특례*를 인정

* (특례 내용) 복수사증 인증, 체류기간 연장(2년→5년) 등

(인정 분야) 첨단 정보통신(IT 카드제), 첨단 제조업(Gold 카드제), 과학·연구분야(Science 카드제)

- 다만, 국적을 취득하려면 현행 국적법상 「일반 귀화제도」에 따라 귀화적격 심사(약 1년 소요) 및 필기·면접시험을 통과해야 함

* 국적취득시 일반 귀화요건 : ①5년이상 주소, ②성년일것, ③생계유지가 가능할 것, ④기본소양 소지(필기 및 면접시험) 등

<문제점>

- 외국 고급기술인력에 대한 국적 취득시 특례가 없어 유능한 고급인력 유치에 한계

<개선방안>

- 외국 고급기술인력이 귀화신청시 귀화적격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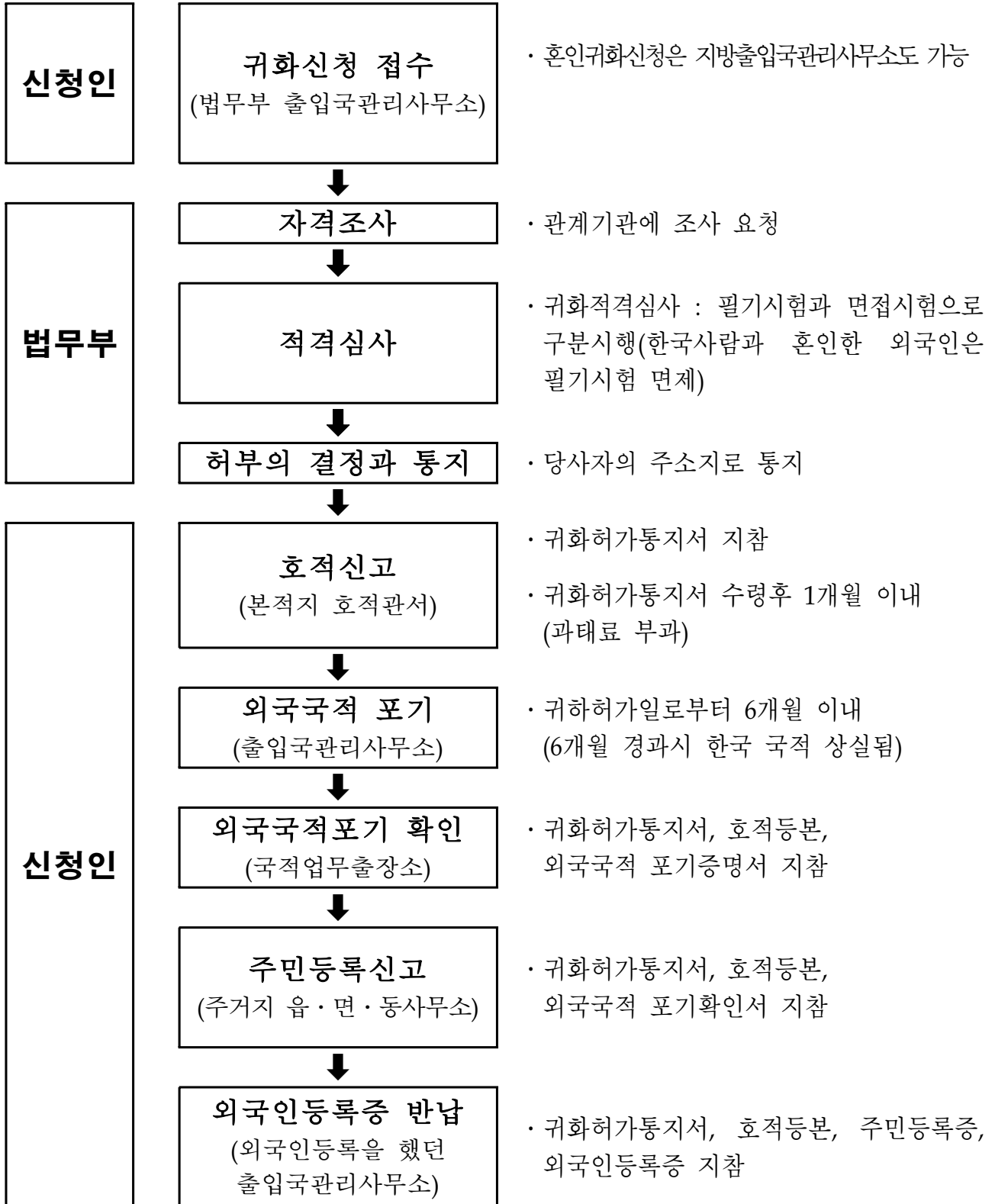
* 국내 내국인 근로자 고용기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선에서 대책안 강구

- (적용대상) 외국의 석·박사급 전문인력으로서 국내 기업·연구소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

* 예시 : 국적법령상 귀화시험에서 필기시험 면제가 가능한 대상범위에 고급기술인력을 포함

참고

국적법상 「일반귀화」 절차



2. 외국인력 도입절차상 전자사증 적용대상 송출국가 확대 추진

<현 황>

□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의한 인력도입 절차

- 고용허가 신청(사용자)→ 외국인구직자 알선(고용지원센터)→ 외국인 근로자 선택(사용자)→ 근로조건 동의(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 입국절차 시작

* 외국인력 도입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79.5일(06년 기준)

- 07.4월말 현재 송출국가로 선정된 15개국 중 7개국에 전자사증 제도를 적용 중

<문제점>

-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감안하여 외국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도입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할 필요

<개선방안>

- 사증발급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 전자사증 적용대상 송출국가를 확대 추진

3. 외국인 근로자 출국에 따른 근로공백 최소화

<현 황>

-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정주화 방지를 위해 취업기간 3년을 설정(1년마다 갱신)하고 기간만료 후에는 출국할 의무 부과

* 법령상으로는 6개월 이후 재입국 가능, 사업주 요구시 1개월 이후로 단축 가능

<문 제 점>

-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기간 3년후 출국하면, 추가 외국인력 투입시까지 통상 4개월이상 산업현장 공백이 발생하여 생산에 차질
 - 사업주 요구시 1개월 경과시 재입국이 가능하나, 외국인 근로자 개인이나 송출국 내부사정으로 재입국이 불가능한 상황도 빈번
- 추가 외국인력이 오더라도 전임자와의 인수인계가 어려워 생산의 질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

<개선방안>

-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기간(3년) 만료 이전 3월부터 출국예정인원 만큼 고용허가 신청을 허용 (지침 마련)

4. 외국인력 Pool DB 정보에 대한 관리 개선

<현 황>

- 현재 송출국가 현지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구직신청시 학력, 경력 등 입증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송출기관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접수
 - 외국인력 정보제공을 위해 인적사항, 희망 취업조건, 이력·경력 관련 정보를 구직자 명부에 작성하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
- * 외국인고용 전산시스템 (EPS, Employment Permit System)

<문제점>

- 외국인 구직자가 기재한 정보를 국내 기관이 DB에 입력시 정보의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어 정확한 정보제공에 한계
- 외국인 구직자의 자기소개서 등 보다 구체적인 정보제공 미흡

<개선방안>

- 향후 MOU 체결시 외국 송출기관의 구직자 정보확인 의무를 명기하고 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외국인력 자기소개서 등 상세정보 제공을 위해 송출국가어 번역 및 자료전송 등 EPS 시스템의 개발·보완 추진

5. 산업단지내 직장보육시설 지원 요건 완화

<현 황>

- 현행법상 사업주(단독 혹은 공동)가 직장보육시설 설치시 시설 건립비 등 소요비용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음
- (지원요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당해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의 수가 보육아동수의 1/3을 초과해야 함
 - * (근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4조의6 제1항 제3호 :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의 수가 전체 보육아동수의 3분의 1(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초과할 것

<문제점>

- 아동의 수가 감소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신규아동 확보가 어렵고, 당해 사업장 요건으로 인해 산단내 인근 사업장 자녀의 이용에 애로 발생
- 조건미달로 정부지원 중단시, 사업주의 운영부담 가중
 - 설치 후 5년이내 폐원하는 경우 설치자금 지원금액 전액 환급

<개선방안>

- 지원요건에 소속 근로자 자녀비율 이외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녀비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추가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개정사항)
- (현행) 소속 피보험자 자녀 1/3 →
(개선) 소속 피보험자 자녀 1/3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녀 1/2

6.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에 기숙사 포함

<현 황>

-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하여,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수의계약 등 지원 실시
-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은 외국인학교, 병원, 약국, 주택, 외국인창업보육시설 등을 포함(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 그러나, 기숙사는 주택에서 제외되어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에 포함되지 못함

<문제점>

- 외투기업(특히 산업단지에 입주한 외투기업)은 기능인력의 원활한 채용을 위해 기숙사가 원활히 설치·공급되기를 희망*하나,
- 기숙사가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에서 제외되어 기숙사 건립사업 활성화에 한계

- * 경기도 설문조사 결과(06.4월, 대상 : 외투기업을 포함한 산업단지내 입주기업)
 - 기업환경중 인력채용에 가장 큰 애로(40.6%)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
 - 기숙사 구비, 대중교통 편리성이 인력채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응답

<개선방안>

- 기숙사를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 범위에 포함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4호 개정

7. 중소기업 재직 공고 졸업생에 대한 입영연기기간 연장

<현 황>

현재 중기청은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시행중

* (사업개요) 중소기업-공고-학부모간 취업협약을 체결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공고생(3학년)에게 기업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졸업과 동시에 2년간 협약취업

○ 프로그램 참여학생은 협약 취업기간인 2년간 입영연기 가능

<문제점>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입영연기기간 연장 필요

○ 중소기업은 열악한 근무환경, 대기업과의 근로조건·임금 격차 등 원인으로 취업을 기피

○ 실업계 고교의 비중감소(00년 39%→ 04년 35%)와 졸업생의 대학 진학 급증(95년 19%→ 01년 45%→ 04년 62%) 등으로 기능인력 확보에 애로 심화

○ 또한 대졸 신입사원 교육에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있으나 사업주의 업무 만족도가 낮아, 숙련도가 높은 공고 졸업생의 취업기간을 연장할 필요

* 대졸 신입사원 재교육에 평균 1.6년 약 4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나 업무성취 만족도는 25.9%에 불과(05년 경총)

<개선방안>

-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공고 졸업생이 희망할 경우 입영예정일로부터 2년(총4년)의 범위내에서 추가로 입영 연기를 허용

* 제도개선 전·후 연령별 취업가능 기간 비교(07년 졸업자 기준)

구 분	계	87년이전 생	88년 생	89년 생
인 원	1,180	20	915	245
	%	1.7	77.5	20.8
취업가능 기간	제도개선 전	2년	2년	2년
	제도개선 후	2년6월	3년6월	4년6월

(자료 : 병무청 현역입영본부)

8. 청년 실업자 대상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시행기간 연장

<현 황>

□ 현재 청년실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을 소요 재원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시행중

* 근거 : 고용보험시행령 제22조의2, 별표1

- (제도개요) 실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29세이하인 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후 12월간 매월 6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대기업은 고용후 최초 6월은 매월 60만원, 그후 6월은 매월 30만원)

⇒ 동 제도는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 (2007. 9월말까지)

<문제점>

□ 현재 청년 실업률이 7~8%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률도 높은 상황에서

- 장려금 지원을 중단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가중될 우려

<개선방안>

□ 「신규고용 촉진 장려금」 제도 시행기간을 2010년까지 연장

참고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 개요

□ 의 의

-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실업자, 고령자, 여성가장, 장애인 등 취업취약 계층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실업의 구조적 악화를 방지하고 신규실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제도

□ 지원조건

- 고용지원센터 등에 구직신청 후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채용

* 대상별 실업기간

지 원 대 상 자	실업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 중 소득 및 실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고시 2006-59호)○ 여성실업자중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시행규칙 제32조의5 제4항)이 정하는 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중증장애인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제1호의 자를 제외한다)○ 29세 이하인 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장애인(제3호의 자를 제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6월

□ 지원수준

- (청년실업자의 경우)실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29세이하인 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후 12월간 매월 60만원을 지급
- 대기업은 고용후 6월은 매월 60만원, 그후 6월은 매월 30만원
- * 그 외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에 따라 지원

9. 해외자원개발 전문인력 확충

<현 황>

- 최근 적극적인 자원외교,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해외자원 개발 사업수가 크게 증가했으나, 국내 전문기술인력이 절대부족
 - 05년 국내 자원개발 분야 전문인력은 540명으로 중국 국영 석유회사나 세계 50위권 석유회사인 Anadarko사(3,800명), 일본의 3,000명과 비교해도 큰 차이
 - IMF이전 자원개발 관련 학과가 12개에 달했으나 낮은 취업률과 학부제 실시, 이공계 기피현상 등으로 대부분 타 학과로 전환

<문제점>

- '16년까지 향후 10년간 총 3,880명*의 신규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인력확보에 애로발생 전망
 - * 석유·가스분야 2,500명, 일반 광물분야 1,380명 (산자부 전망)

<개선방안>

-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해 「자원개발특성화대학」 지정
- 해외자원개발 기업·연구소 전문인력에 대한 병역특례 확대
 -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12년) 전까지 대기업에도 배정 허용
 - 전문인력요원제도*를 통해 인력 추가 지원
 - *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 중 학문과 기술 연구분야에서 일정기간 종사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하는 병역특례제도
- 자원개발 분야 자격제도(기사·기술사) 신설 검토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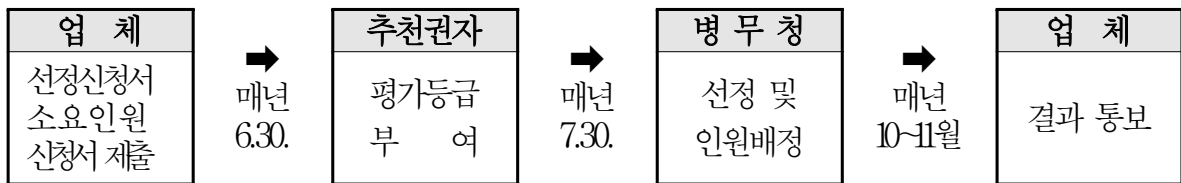
전문연구요원제도 운영개요

□ 해외자원개발 전문기업 (자원개발사업법)

- 국외에서 광물(석유, 가스, 철광석 등), 농축산물, 수산·임산물을 단독 또는 외국기업과 합작으로 개발하는 기업으로 관계장관에게 신고된 기업

□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 절 차



○ 선정 및 배정

- 추천권자·병무청 평가등급을 감안 우수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 지원인력 규모

- 전문연구요원 : 매년 2,500명 지원
- 산업기능요원
 - 현역 : 2011년까지 매년 4,500명 지원, 2012년 이후 폐지
 - 보충역 : 매년 20% 감축, 2012년 이후 폐지

□ 편입 대상

- 전문연구요원 : 석사이상의 학위취득자
- 산업기능요원 : 국가기술자격·면허 소지자

□ 관리 현황(07.1.31 현재)

구 분	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업 체 수	10,114	1,745	8,369
복무인원	37,479	6,701	30,778
	(18,054/19,425)	(6,215/486)	(11,839/18,939)

※ ()는 현역/보충역

10. 산재승인 결정시 근로자의 과거 상병에 대한 관리개선

<현 황>

-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는 업무상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로 승인받음

<문제점>

- 산재 상병 입력시 과거 상병에 대한 연계가 미흡하여, 불승인 받은 상병이 추가로 산재승인을 받는 사례 발생

- 현재 노동보험시스템(노동부)을 통해 근로자의 과거 상병을 확인 가능하나 '95년 이전의 경우 전산입력이 되지 않은 부분 존재

* 사례 : 근골격계질환(목 부위)로 산재인정을 받고, 과거 불승인 처리된 허리부위까지 추가 상병으로 산재인정

- 또한 근로자가 추가상병 신청시, 사업주 의견을 미반영

<개선방안>

- 금년중 요양중인 산재환자의 전체 과거 상병자료를 입력하여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 근로자의 추가 상병 신청에 대해 사업주가 의견을 제출시, 제출의견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인정될 경우 반영·처리

11.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산업안전 성능 검사 제도 개선

<현 황>

-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수입하는 자는 당해 제품의 제작·안전기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계·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함(산업안전공단 시행)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 이 경우 제품의 구조검사를 위해 분해시험 과정을 거침

<문제점>

- 제품을 분해해 검사하므로, 석유화학 관련 제품 등 정밀기계의 경우 검사후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

<개선방안>

- 제품 검사시 해당 제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업체직원의 입회를 허용

12. 산재예방기관 운영에 대한 사업주 참여 확대

<현 황>

- 산재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산업안전공단의 운영비와 사업비는 99%이상 사업주가 부담(산재보험료)하나 사업주 단체의 공단업무 참여는 매우 제한적
- 공단이사회(최고 심의·의결기구) 구성
 - 12인: 공단 4인(이사장, 이사), 노동계 1인(한노총), 경영계 1인(경총), 학계 2인(안전·의학), 정부 3인, 감사 1인
 - 이사회 구성원 12인 중, 공단이사장 1인과 상근이사 3인, 당연직 이사인 정부관계자 3인 등 총 7인의 정부·공단 관계자가 이사회 의결권을 행사

<문제점>

- 안전공단 이사회는 정부·공단 관계자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고, 노사의 참여는 비상근이사 각 1명에 불과하여 노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
- 사업 및 예산집행에 실질적 권한을 가진 상근이사가 「이사장 추천 → 노동부장관 임명」으로 되어 있어, 사업주는 단순히 정부·공단사업과 예산집행을 추진하는 역할에 불과

<개선방안>

- 금년중 노사대표 중 비상임 이사의 수를 확대

13. CLEAN 사업의 「지역별 목표할당제」 개선

<현 황>

- CLEAN사업은 재정이 취약해 안전조치와 작업환경 개선이 어려운 50인미만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재해예방 사업
- 현재 각 지역의 사업대상 물량, 과거 사업참여 및 지원실적 추이 등을 분석하여 지역별 목표물량을 배분중(지역별 목표할당제)
 - * 지역별 유해·위험사업장의 특성에 맞춰 지원하는 동시에, 연간 사업계획 수립시 지역간 신청대비 지원물량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

<문 제 점>

- 지역별로 물량이 나뉘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유해·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에 지원이 집중되지 못하는 측면(사업 효율성 저하)

<개 선 방 안>

- 현행 지역별 목표할당제를 보완하여 유해성이나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에 재원을 우선 지원(‘우선지원 대상사업장’ 선정기준 개선)

□ 제도취지

- 재정적·기술적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재해취약 사업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로 개선함으로써 재해예방 및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01.10월부터 추진

□ 지원내용 및 방법

- 50인 미만 제조업에서 안전보건시설 개선시 최대 3,000만원(작업환경 취약업종은 4,000만원)까지 지원
 - (지원대상) 상시근로자수 50인미만 제조업체
 - (지원금액) 사업장당 3,000만원(주물·도금·피혁·염색 및 화학제품 제조업은 4,000만원)
 - (지원방법) 기본보조 1,000만원(전액지원), 추가보조 2,000만원(투자금액의 50%)
 - (지원품목) 위험기계·기구 안전장치, 국소배기장치 등 90종
- 자금지원 절차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 「안전관리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지원 결정
 - 사업주가 안전보건시설 투자를 완료한 후 「CLEAN 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자금을 지급

14. 외국인근로자 사후관리 개선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확충

<현 황>

- 현재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처리 및 상담을 위해 노동부는 수도권에 민관합동으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3개소를 운영중

<문제점>

- 전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
 - * 수도권에 서비스가 편중되어 지방의 외국인근로자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 또한 국내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외국문화에 대한 교육, 외국인근로자의 국내문화에 대한 교육 등이 미흡

※ 외국 및 국내 사례

【외국 사례】 대만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통역서비스 제공 및 자문 기구로 전국에 23개 Foreign Workers Consultation Service Center를 운영하여 영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등으로 상담업무를 지원

【국내 사례】 종교단체, 인권단체 등 170여개 민간 외국인지원단체가 고충상담업무를 중심으로 소규모·간헐적으로 지원

<개선방안>

- 08년도에 지방의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를 추가 설립

참고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개요

□ 사업개요

-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충상담, 한국어·생활법률·한국문화교육 등의 지원을 통해
 - 국내생활 적응 및 원활한 취업활동을 촉진하여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력활용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운영
- 현재 외국인 밀집지역인 영등포구 가리봉동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안산시에 「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운영 중
 - 금년에 의정부시에 1개소 설립, 향후 2개소 추가 설립예정

□ 기능 및 지원근거

○ 주요기능

-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원만한 노사관계 유지를 위해 노사간 의사소통 및 고충처리 해결, 산업안전·산재보상 등 노동관계법에 관한 교육 등 외국인근로자의 직업생활을 지원
- 특히, 인력난을 겪고 있는 3D업종 중심의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활용 원활화를 도모

○ 지원근거

- 외국인고용법 제21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의 편의제공 사업으로 동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업무를 위탁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고용보험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사업주의 인력확보 지원을 위한 고용촉진시설」에 해당

15. 장기 재직 근로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개선

<현 황>

-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5년 이상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운영중

* 근거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0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 06년도에 1,191호를 확보하고 251호를 추천

-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특별공급의 동일 순위(4순위)에 있는 공무원 및 군인보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우대 조치
(07.1월, 06.9월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문제점>

-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장기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구조적 한계(4순위) 및 홍보 부족으로 활용도가 낮은 실정

* 확보·추천 현황(괄호는 비율) : (04년) 확보 618호·추천 78호(13%), (05년) 확보 729호·추천 126호(17%), (06년) 확보 1,191호·추천 251호(21%)

<개선방안>

- 주택 특별공급 추천시 타 직종보다 장기 재직 기술·기능인력을 우대 (중기청 고시 개정)

* (현행 기준) 중소기업 근속기간 40점, 동일직장 재직기간 40점, 소기업 15점, 수상경력 5점

- 주택 특별 공급받은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지역별·건설회사별 공급 실적을 공표

16. 중소기업 인력구조고도화 사업 지원대상 확대

<현 황>

□ 중소기업 인력유입 및 인력구조 고도화(예: 노무직→기능직→기술직) 등 지원을 위해 05년부터 ‘중소기업 인력구조 고도화사업’을 시행중 (중기청)

-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회원 중소기업의 공동인력 채용 및 인적자원 관리, 교육훈련 등을 패키지로 지원

* 06년 20개 조합을 통해 4,414개 업체 11,361명의 근로자 참여

<문제점>

□ 중소기업 전반의 인력구조 고도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으나, 지원 대상을 협동조합에 한정하여 사업의 파급효과가 제한

-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은 협동조합 이외에 중소기업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단법인도 포함하여 운영

* 행정구역 지사가 협동조합 등이 수립한 중소기업 인력개선 계획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자금을 지원

<개선방안>

□ 중소기업 인력구조고도화 사업 지원대상 확대

- 업종별 단체 및 협회를 추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개정)

참고

「중소기업 인력구조고도화 사업」 개요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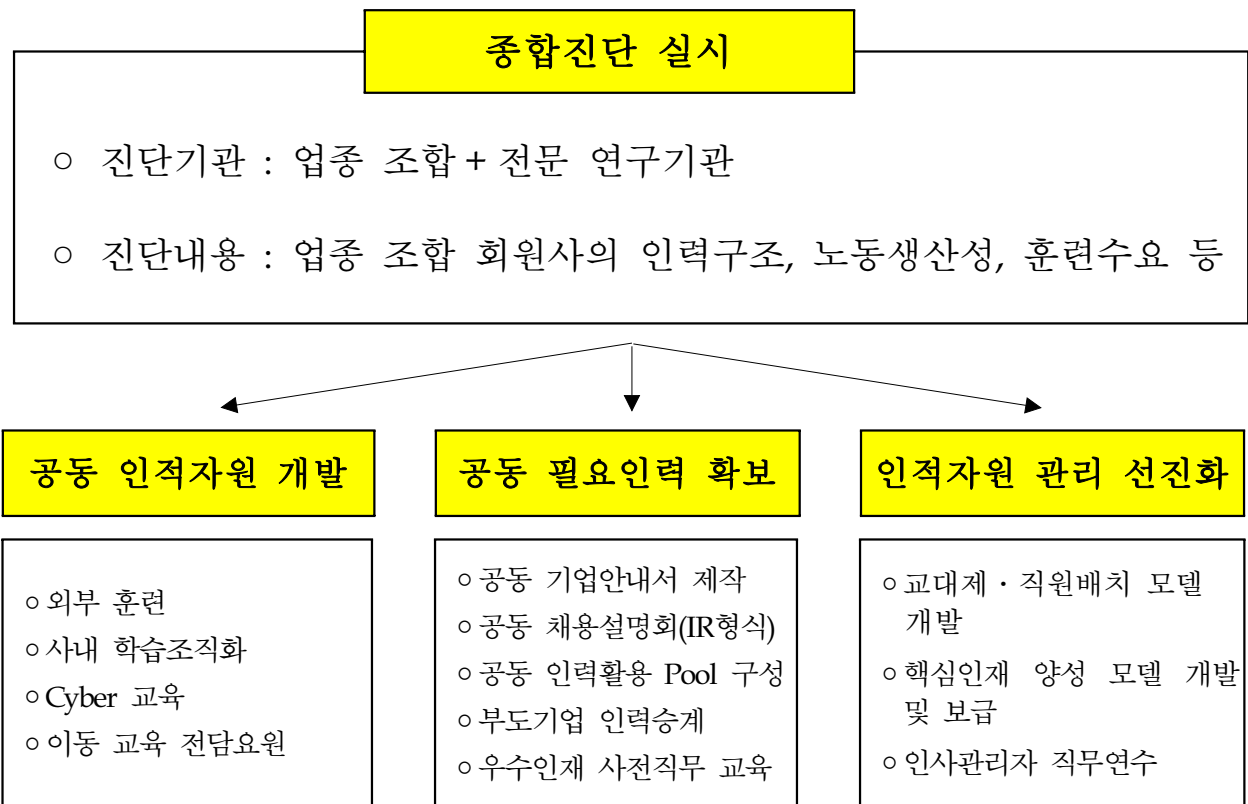
- 중소기업의 인력구조 고도화를 위해 인력수급 실태파악에서 고급인력의 확보 및 유지관리까지 체계적인 인력관리체계 마련을 지원

* 업종·지역별 조합을 통해 해당 조합원사에게 공동 인적자원개발·공동채용 활동 등 조합·회원사가 원하는 인력지원서비스를 패키지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조합·사업조합·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 지원분야



□ 지원규모 : 29.1억원(07년)

17. 구직자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정보제공 강화

<현 황>

- 노동부는 중소기업 현황과 관련 정보를 제공중
 - (중기청) 중소기업 현황DB를 통해 약 40만개 중소기업의 개요와 보유기술, 매출 등의 정보 제공
 - (노동부) 워크넷 등을 통해 인력채용 희망기업이 제시한 근로 조건, 기업규모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문제점>

- 현재 제공되는 정보는 피상적인 수준으로, 임금과 복지 수준, 기업비전과 성장가능성 등 구직자가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은 미흡
 -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유능한 기술·기능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저해

<개선방안>

- 07년에 임금정보제공시스템(www.wage.go.kr)을 구축, 08년 상반기에 시범운영 후 하반기 본격 가동

IV. 기업과세 선진화

1. 기술지주회사의 배당수익금액 익금불산입율 상향조정

<현 황>

지주회사는 일반법인에 비해 법인간 배당시 익금불산입율을 높게 적용

○ 지주회사의 범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지주회사 익금불산입율(비상장법인)>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분	익금불산입율		
		07	08	09
지주회사	100%	100%	100	100
	80%~100%미만	90%	90	100
	80%이하	70%	80	80

<일반법인 익금불산입율(비상장법인)>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분	익금불산입율
일반법인	100%	100%
	50~100%미만	50%
	50%이하	30%

<문 제 점>

기술지주회사의 경우 일반법인과 같은 비율로 이중과세 조정토록 하여 여타 지주회사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

<개 선 방 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지주회사도 여타지주회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법인간 배당에 대해 이중과세 조정

2. 산학협력단이 지급하는 대학교수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현 황>

- 사용자가 종업원에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문제점>

- 대학이 고용관계에 있는 교수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되나
 - 산학협력단과 대학교수 사이에는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어 산학협력단이 대학교수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하여는 과세

<개선방안>

- 산학협력단이 소속대학 교수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
 - 산학협력단 설치 이전과 이후에 지급 주체가 변경되는 이유로 당해 보상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문제점 해소

3. 산학협력단의 기술지주회사 주식소유한도 예외 인정

<현 황>

- 공익법인이 지주회사화되어 계열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행주식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과세
 - 다만, 다음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의 경우 5% 초과보유를 인정
 - 성실공익법인(매년 운용소득의 90%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에 해당할 것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이 아닐 것
 - 출연자와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것
 - 주무장관이 목적사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설립한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더라도 5% 초과보유시 증여세 과세

<문제점>

- 산학협력단을 통한 대학기술의 산업화 저해

<개선방안>

- 대학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학협력단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술지주회사 주식 소유한도 예외 인정

* 예시) 다음 조건 충족시 기술지주회사 주식 5% 초과보유 허용

- ① 산학협력단이 기술을 출자하여 기술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할 것
(단, 기술출자의 10%내에서 현금출자 허용)
- ② 산학협력단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이 기술지주회사 주식의 50% 이상일 것
- ③ 기술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다른 회사주식(특히, 출연자와 특수관계있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을 것

4.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펀드 출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현 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문제점>

□ '07년 1월 벤처기업특별법을 개정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母조합)의 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주식취득을 허용하였으나

-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조합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양도차익 과세

<개선방안>

□ 한국벤처투자조합(母조합)의 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 母조합과 자조합이 모두 도관(pass-through entity) 성격임을
감안

5.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완화

<현 황>

- 창업 후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해 소득 발생 후 4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

<문제점>

- 창업 초기 벤처확인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워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

<벤처기업 유형별 확인요건>

벤처 유형	벤처 요건
벤처투자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투자기관이 기업의 자본금의 10%이상 투자할 것 · 최소 5천만원 이상 투자할 것 · 투자유지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기술평가 보증·대출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일 것 · 보증·대출금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이상일 것 · 기술성평가가 우수할 것
연구개발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일 것 · 연간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금액이 총매출액의 5~10%이상이며, 사업성평가가 우수할 것

<개선방안>

-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간을 창업후 2년에서 3년으로 늘여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

6. 벤처 창업활성화를 위한 파트너십과세제도 도입

<현 황>

- 벤처·지식산업의 발달로 전문인력이 중심이 되는 중소기업 인적회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 최근 상법개정을 통해 새로운 인적회사 형태의 기업인 유한책임회사와 합자조합의 도입 추진 중
 - 「제1차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서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였음

* 선진국 도입사례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

<문제점>

- 인적회사에 부합하는 과세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업의 원활한 설립이나 운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파트너십 과세제도와 유사한 제도로써 공동사업장 과세제도 및 인적회사 과세특례가 있으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공동사업장 과세제도는 법인이 참여하는 공동사업에 대한 규정이 없고, 현물출자·지분양도·자산분배 등에 대한 규정 미비

** 인적회사 과세특례제도는 대상이 지식기반산업으로 제한적이고, 현물출자·지분양도·자산분배 등에 대한 규정 미비

<개선방안>

- 인적회사적 성격이 있는 합명·합자회사, 조합 등에 대해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
 - 파트너십 과세제도 : 파트너십의 소득에 대하여 파트너십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그 구성원인 파트너에게 배분하여 과세

* 상법이 개정되어 유한책임회사 및 합자조합 형태의 기업이 도입되는 경우 이를 파트너십 과세제도 적용대상에 포함

7. 항공화물 유치 활성화를 위한 재수출 면세 대상 확대

<현 황>

- 공항 시설이 부족한 중국 칭도 등의 항공화물을 인천공항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RFS* 도입 필요

* RFS(Road Feeder Service) : 타지역 항공화물을 트럭에 싣고 트럭채로 공항까지 운반하여 항공기로 환적수송하는 서비스(예 : 중국 차량에 화물을 적재하여 트럭채로 선박으로 이동 후 동 트럭이 직접 인천공항까지 운송하여 비행기에 환적)

- RFS 시스템 도입시 물품 하역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항공화물 유치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문제점>

- 현행 규정상 인천항에서 인천공항으로 “환적하는 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은 관세부과 대상이어서

- 관세부담으로 인하여 RFS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

* 현행 규정상 “수출입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만 재수출면세 대상으로 관세 납부가 면제됨

<개선방안>

- RFS 도입확대를 통한 항공화물 유치활성화를 위해 재수출면세 대상에 「반송 및 환적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을 추가

* RFS를 도입하여 운송시간을 단축할 경우 중국 항공화물의 유치 증가로 인천공항의 허브화 가속 전망

<참고1> RFS(Road Feeder Service) 사업개요

- “RFS”란 타지역 화물을 트럭을 통해 공항까지 운반하여 항공기로 환적수송하는 서비스로서
 - 중국 환적화물을 유치하여 인천공항의 허브화를 가속화하고 국제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추진 중
- 기존 Sea & Air 운송방식에 비해 시간·비용절감이 가능하여 인천공항 환적화물량의 증가 기대
- ※ RFS 물동량 : 청도공항의 시설 부족으로 청도공항에서 육로로 북경공항·상해 공항으로 이동되는 항공화물(매월 약1,200톤)이 잠재물량으로 파악
 - 소요시간 : Sea & Air 30시간, RFS 23.8
 - 청도발 미주행 화물가격(1kg당) : Sea & Air 3.0 \$, RFS 3.2



8. 관세 가격신고제도 간소화를 통한 물류흐름 개선

<현황>

□ 가격신고는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에 가산되거나 공제되는 요소 등 과세가격의 산정 근거를 신고하는 제도임*

* 과세가격을 평가(valuation)하는 근거를 신고한다고 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평가신고라고 부르기도 함

○ 현재 일부 생략대상을 제외하고는 수입신고시 매 건별로 가격신고를 하도록 규정

* 가격신고 생략대상 : 정부·지자체 수입물품, 무세물품, 수출용원재료, 방위산업용 기계 및 특정연구기관 수입물품 등

<문제점>

□ 가격심사의 실익이 낮은 소액물품에 대해서도 복잡한 가격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 동일 거래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매 수입신고시마다 가격신고를 하도록 하는 불편 초래

<개선방안>

□ 소액신고 물품에 대한 가격신고 간소화

○ 편익 대비 납세자의 부담이 과도한 1만불 이하소액 물품 (EU·일본 등도 1만불을 기준으로 함)은 가격신고를 생략

* 1만불 이하 물품 신고비율 : '06년 48%(330만건중 161만건)

□ 동일 거래조건으로 동일한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일정 기간별(예 : 1년)로 주기적 가격신고를 허용

* 추가적으로 연간 10%(33만건)에 대한 가격 신고 생략 가능

9.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범위 확대

<현 황>

- 제조업체의 인건비 절감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국내 제작이 곤란한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용중
 - 감면대상 - 505개 품목, 감면율 - 30% (중소기업 50%)

<문제점>

-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업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일부 품목이 제외되어 있고
 - 일부 품목의 경우 규격이 명확하지 않아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혼선 야기

<개선방안>

- 단순기능 자동회편기*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물품을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고,
 - 감면을 신청하는 제조업체와 업무를 집행하는 세관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단조기** 등 20품목의 규격을 명확화

* 자동회편기 : 스웨터 등의 무늬를 넣으며 옷을 짤 수 있는 기계

** 단조기 : 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필요한 형태로 만드는 기계

10. 연구개발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범위 확대

<현 황>

- 국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수입하는 물품 중
 - 재경부령으로 지정한 품목에 대해 해당 관세액의 80%를 감면하는 연구개발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 운용중

<문제점>

- 수요가 증가하는 신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대상물품 확대 필요

<개선방안>

- 현행 감면대상 품목 중 수입 실적이 없거나 지원효과가 없는 품목을 정비하고
 - 반도체, LCD, 자동차산업 등에서의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하이브리드 기술 등의 개발에 필수적인 연구개발물품*을 감면대상에 추가

* 신규감면대상품목(47개): 수분발생기, 고압반복가압시험장치, 항온발효 시스템, 시료열분해기, 캡핑기, 캡슐 충전기, 포장기, 급수관 세정 시스템, 범프 형성기, 전처리 자동화장치, 디핑기, 전기방사장치, 압연기, 선반, 기어 세이퍼머신, 석영 가공용 불선반, 전원안정화장치, 오존발생기, 주파수 2배기, 담배제조기, 실험용필터부착기, 웨이퍼 확장기, 글로브 박스, 분말 코팅기, 확산 투석장치, 팬들럼 밸브, 로울러 베어링, 플렉시블 커플링, 화상분석기, 3차원종이 면구조 측정기, 적재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권련끝빠짐 측정기, 혈압 측정기, 전자혀, 웨이브 폼 모니터, 반사 전자 검출기, 아이트래킹 시스템,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기저귀흡수력 측정용 마네킹장치, 자력 측정기, 경사계, 조타력 3분력 검출장치, 운전자 동작분석기, 섬유 배향성 측정기, 다중빔 초음파 발생기, 금형가공기

11. 유상으로 일시수입 되는 금형에 대한 관세 면세

<현 황>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체상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금형을 수입하여 일시사용 후 다시 수출하는 경우

- 무상으로 수입되는 금형에 한해 관세를 면제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는 유상으로 수입되는 금형에 대해 관세(8%)를 부과하는 반면,

- 일본, 중국 등은 제품 생산용으로 생산자에게 유상으로 공급되는 금형에 대해서도 비과세하고 있어 자체상표 제품의 국내 생산이 해외 경쟁국으로 이탈할 우려

<일시수입 되는 금형에 대한 비과세 현황>

국가별	한국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관세율	8%	0%	면세	면세	면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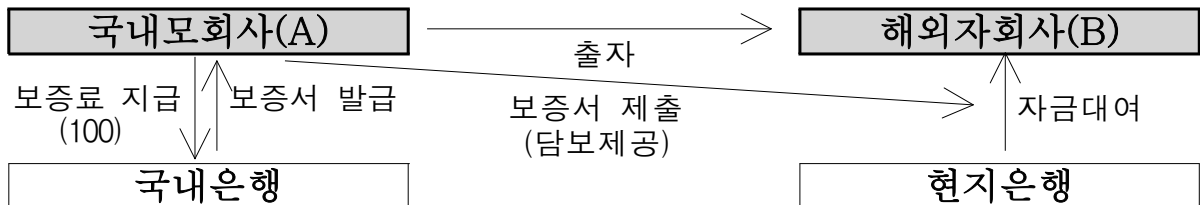
<개선방안>

기존에 금형이 무상공급인 경우에만 인정하던 면세를 유상인 경우까지 확대

12.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서비스 비용 손금산입

<현 황>

- 국내모회사가 해외자회사의 금융차입을 위해 지급한 보증료의 경우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



- * 해외자회사(A→B)가 현지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데, 국내모회사(B→A)가 국내은행에 보증료를 지급하고 발급받은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

<문제점>

- '06년 8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와 행한 용역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기준 마련
 - 그룹내용역 제공에 대하여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하여 「용역을 제공 받은 자」는 비용을 정상가격으로 손금산입하고, 「용역을 제공한 자」는 수수료를 정상가격으로 익금산입
- 해외자회사가 국내모회사에 대해 지불할 지급보증수수료가 정상가격으로 국내모회사의 익금으로 산입되어 과세된 경우
 - 국내모회사가 국내은행에 지급한 보증료는 대응손비로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무관지출로 취급되어 손금불산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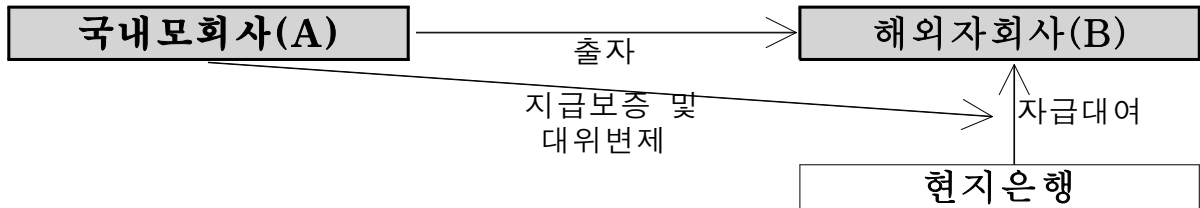
<개선방안>

- 해외자회사를 위해 국내 모회사가 지출한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해 손금산입 허용

13.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허용

<현 황>

- 국내모회사가 해외자회사를 위해 채무보증을 하고 대위변제하는 경우 구상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손금산입 불가능



- * 해외자회사(A→B)가 현지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데, 국내모회사(B→A)가 지급보증한 후, 동 대여금에 대해서 국내모회사가 현지은행에 대위변제

<문제점>

- '06년 8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내 모회사(A)에 대해 지급보증용역의 대가가 익금산입되어 과세된다면
 - 대위변제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상 손금산입 불가능

<개선방안>

- 해외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상채권을 일정요건*하에서 대손처리 허용

- * 요건 : ①해외자회사 설립후 3년 이내 보증할 것 ②해외자회사가 명목회사(paper company)가 아닐 것 ③국조법 제4조에 따라 국내모회사에 과세가 이루어 질 것 ④주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대위변제가 발생할 것

14.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대상 확대

<현 황>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적용을 위한 해외자회사 판정기준에 있어

- 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자회사의 지분비율 요건이 20%인 반면,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경우에는 25%로 차등규정

*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을 지급받은 경우 자회사의 소득에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지급받은 배당에 대응하는 법인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손금산입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적용방법 요약표 >

구분	일반법인				해외자원개발사업			
	조세조약 규정이 있는 경우		조세조약이 없거나 규정이 없는 경우		조세조약 규정이 있는 경우		조세조약이 없거나 규정이 없는 경우	
지분율	20% 미만	20% 이상	25% 미만	25% 이상	5% 미만	5% 이상	5% 미만	5% 이상
공제 비율	-	100%	-	50%	-	100%	-	50%

<문제점>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회사의 지분비율이 높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힘들고, 법에 따라 자회사의 판정기준이 달라 납세자의 혼란 야기

<개선방안>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해외 자회사의 범위를 확대(지분비율 25%→20%)

15. 개성공단 투자기업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현 황>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공포(07.5.25)

- 개성공업지구 개발을 지원하고,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거나 출입·체류하는 남한주민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문 제 점>

현재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업체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적용

* 임시투자세액공제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29개 업종에 대해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하는 금액의 7% 세액공제

- 개성공단에 공장부지를 분양받은 기업에게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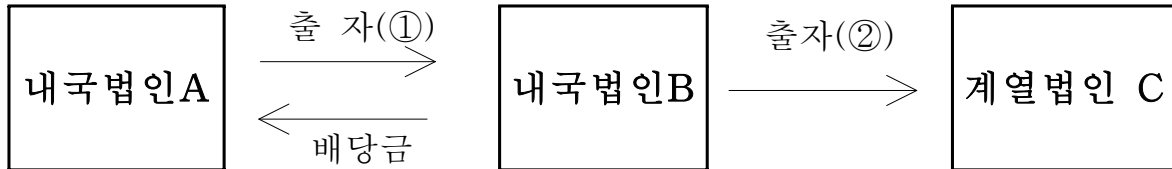
* '07. 4. 30. 1단계 공장용지 166만㎡(50.4만평) 분양 공고

<개선방안>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업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 허용

16.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열회사 범위 축소

<현 황>



- 법인간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내국법인 A가 내국법인 B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 출자비율에 따라 일정 비율을 익금불산입

<일반법인간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율>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지분비율	익금불산입율	지분비율	익금불산입율
100%	100%	100%	100%
30%~100%미만	50%	50%~100%미만	50%
30%이하	30%	50%이하	30%

-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회사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 내국법인B가 A의 계열법인 C에게 재출자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A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
 - 익금불산입 배제금액 금액 = (수입배당금 × 익금불산입비율) ×

$$\frac{\text{배당지급법인이 계열법인에 출자한 주식의 장부가액 적수}}{\text{배당지급법인에 출자한 주식의 장부가액 적수}}$$

<문제점>

□ 내국법인 B가 내국법인 A의 계열회사가 아닌 경우

-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회사 확장의 우려가 없음에도 익금불산입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개선방안>

- 내국법인(A), 당해 내국법인에 배당을 지급한 법인(B), 배당 지급법인이 재출자한 법인(C)이 모두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익금불산입을 배제(과세)하는 것으로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 범위 축소

17. 매입세액 불공제된 재화를 면세사업 전용시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현 황>

- 과세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는 매입세액 공제되는 반면에
 - 면세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는 매입세액 불공제
-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간주공급) 부가가치세를 과세

<문제점>

-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화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특별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는 경우 발생
 - * 과세사업연도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으나, 동일과세기간내에 이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
- 이러한 경우에도 현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면서 과세되므로 부가가치세를 이중부담하는 결과 초래

<개선 방안>

-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취득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

18. 하자물품 보세공장 재반입시 관세 환급제한규정 완화

<현 황>

- 계약내용과 다른 수입물품(하자물품 등)의 경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재반입*시 관세를 환급해 주고 있는 반면

* 최초 반입된 보세구역과 다른 보세구역에 재반입·수출되어도 환급 허용

-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의 경우 1년 이내 「최초로 수입 신고된」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된 경우에만 환급

<문 제 점>

- 보세공장에서 수입된 하자물품을 타 보세공장에서 반입하여 수리한 후 재수입하는 경우 이중과세 문제* 발생

* 수입시 “과세 → 하자에 따른 보세공장 반입시 미환급 → 재수입시 다시 과세”

<개 선 방 안>

-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도 최초 수입신고한 보세공장이 아닌 다른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에도 환급 허용

* 보세공장 생산물품 여부 및 환급 여부 등은 전산시스템으로 조회가 가능하여 부정환급의 가능성 없음

19. 비상장법인 발행 주식에 대한 투자손실 인정 범위 확대

<현 황>

기업이 보유하는 주식의 평가손익은 세무상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예외적인 경우 감액손실을 인정하여 투자손실을 손금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음

주식감액사유

- 상장법인, 창투사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 부도, 회생계획인가 결정, 부실징후기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결정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

- 기타 비상장주식 : 파산

<문제점>

비상장 법인 주식은 부도 등으로 주식가치가 대폭하락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하기 전에는 주식감액손실을 인식할 수 없는 문제 발생

<개선방안>

비상장법인 중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주식보유법인이 주식가격을 임의로 조작할 소지가 희박하므로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액손실 인정

20. 사업자등록 법정처리기간 단축

<현 황>

- 신설 법인은 사업개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토록 규정(법인세법 제111조)
 - 사업자등록 신청시,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허가증 사본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문제점>

- 주식회사 설립 소요기간 총 22일중 사업자등록에 약 8*일이 소요되어 신속한 법인설립에 장애요소로 작용

* 사업자등록 법정처리기간 7일 + 찾아가는 날 1일(세계은행 보고서)

<개선방안>

- 사업자등록 처리기간을 현행 7일에서 5일 (근무일 기준)로 단축
 - 단, 제출 서류 미비 등에 따른 보정요구 기간은 기간 산입 제외

21. 보세공장 원료과세 신청절차 개선

<현 황>

- 보세공장이 생산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완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 통상 완제품의 관세율이 원재료의 관세율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여 사전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된 원재료에 과세 (원료과세 제도)

<문제점>

- 현행 원료과세 제도는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활용실적이 저조(대기업: 10% 수준, 중소기업: 활용 미미)

- * ① 반입시 “건별로 미리 원료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하고
- ② “대상 원재료를 별도로 관리”하는 한편,
- ③ “이중 검사”(적용신청시와 원재료 사용신고시) 등의 부담 발생

<개선방안>

- 원료과세제도 적용신청을 원재료 반입시 건별이 아닌 일정 기간별(예: 1 회계년)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재료 사용 내역은 사후에 서면관리하도록 개선

- * 최근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 도입 등으로 사후 회계장부를 통한 원재료 소요량 심사가 가능

22. 법인세 신고기한의 단순화

<현 황>

□ 법인세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

<문제점>

□ 사업연도 종료일이 월말(3월, 6월, 9월, 12월)에 종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 유동화전문회사(SPC) 등 월중에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일부 예외적인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을 혼동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음

(예) 사업연도 종료일이 12.15일인 경우 3월 15일이 법인세 신고 기한이나 이를 3월말로 오해

<개선방안>

□ 법인세 신고기한을 「사업연도 종료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변경

- 월중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법인의 신고기한과 일치시켜 납세자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23. 특별소비세 총괄납부 승인절차 간소화

<현 황>

특별소비세 총괄납부 승인기관 및 기간

○ 승인기관 : 관할지방국세청장

○ 승인기간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특별소비세 총괄납부제도 : 특별소비세를 여러 군데의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하는 사업자에 대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문 제 점>

승인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길어 납세자가 적기에 승인 받지 못하는 실정

<개선방안>

특별소비세 총괄납부 승인권자 및 승인기간 단축

○ 승인기관 : 관할세무서장

○ 승인기간 : 신청일부터 20일 이내

24.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기업회계기준 수용

<현 황>

- 법인의 건설자금이자 대해서는 건설자산의 원가에 가산하여 처리하고 추후 감가상각으로 손비처리토록 강제화

* 건설자금이자 :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지출금

<문 제 점>

- 기업회계기준과 세무회계가 일치하지 않아 법인세 신고시 별도의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 특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다툼이 자주 발생

<개선방안>

- 건설자금이자 처리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하여 건설자금이자를 당기비용으로 선택하여 처리 할 수 있도록 개정

V. 물류인프라 구축

1. 모듈 트레일러의 운행방안 마련

<현 황>

□ 현행법상 중량화물 운송을 위해 특수제작된 모듈 트레일러의 등록 자체가 허용되지 않아 도로 운행이 금지

* 모듈 트레일러 : 선박구조물, 발전설비, 공장설비 및 플랜트 등 초·중량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특수제작한 장비로 화물의 하중을 분산하기 위해 수십개 바퀴 장착 (폭 3m, 16톤, 화물적재시 총중량 200톤)

** 자동차안전기준 규칙(건교부령): 폭 2.5m, 총중량 40톤 등으로 자동차 크기 제한

<문제점>

□ 조선 및 대형 구조물 운송은 모듈 트레일러로만 가능하므로 항만 주변 등에서 불가피하게 불법 수송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전국 13개사 101대 모듈 트레일러 중 16대만 등록된 차량으로 운송 (87년 이전에는 트레일러에 대해 제한없이 등록을 허용)

□ 동건은 06년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08년까지 “장기검토”하기로 한 과제이나,

○ 최근 밀양에서 트레일러 도로진입과 관련, 사회문제화된 바 있고, 업계에서도 건의가 지속

<개선방안>

□ 07년 말까지 모듈 트레일러의 운행방안을 마련하고 08년에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 조속히 모듈 트레일러의 합법적인 운행이 가능하도록 추진

2. 물류시설 캐노피에 대한 규제 합리화

<현 황>

- 현행 건축법상에서 물류센터(창고)의 건축면적을 계산할 때 캐노피(돌출차양)의 면적을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 당초 캐노피중 폭 3m 이상 부분을 건축면적에 산입토록 하였으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건축면적의 10% 초과분으로 기준 변경 ('05.10월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 문제점 >

- 건축면적 산입기준이 정량(3m)기준에서 비율(건축면적 10%초과) 제로 변경되면서 건축면적이 작은 일부 중소 물류센터의 경우는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는 결과 발생
 - 건폐율 한도를 맞추기 위해서 캐노피를 줄이거나 없애야 해서 우천시 물품 상·하차 작업이 어려운 실정

<개선방안>

- 캐노피의 건축면적 산입시 정량(3m)기준과 비율(건축면적 10% 초과) 기준 중에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3. 항만공사 사업용토지 보유세경감을 통한 물류비용 증가요인 해소

<현 황>

□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에서 100% 출자하여 부산항만공사(04.1월), 인천항만공사(05.7월)를 설립

○ 향후 2013년까지 5개 항만공사가 추가 설립될 예정

* 울산항('07), 평택당진항('08), 여수·광양항('11), 군산·장항항 및 포항항('13)

□ 항만공사의 사업용토지(방파제, 야적장, 화물터미널 등)에 대해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최고 1.6% 종합부동산세 부과

* 종합부동산세 추정액 : (07년)115억원 → (08년) 231억원 → (09년) 257억원

<문제점>

□ 사회간접시설인 항만시설에 대한 종부세 부과가 예상됨에 따라 항만시설사용료 인상 등을 초래하여 물류경쟁력 약화가 예상

<개선방안>

□ 인천, 부산에 항만공사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감면 조례로 보유세를 경감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

○ 울산 등지에 항만공사가 추가 설립시에는 지방세법시행령에 반영(분리과세대상)하는 방안도 강구

4.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절차 합리화

<현황>

□ 선박용물건에 대한 형식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함

* 근거: 선박안전법제18조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문제점>

□ 현재 국제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국제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을 받아 합격한 선박용 물건도 다시 국내 지정기관의 형식승인시험을 받아야 함

○ 동일한 시험을 반복해서 받게 되어 시간·경제적 부담 초래

* <외국사례> 일본, 미국 및 유럽 선진국의 경우 국제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 인정

<개선방안>

□ 국제공인시험기관에서 형식승인 시험기준에 따라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시험 면제 (선박안전법시행규칙 개정)

5. 인천공항물류단지의 차량통행 규제 개선

<현 황>

- 인천국제공항내 자유무역지역 통행하고자 하는 자나 차량은 모두 출입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근거 :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52조(자유무역지역의 출입)

- 현재는 월5회 미만 출입차량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출입증 발급을 면제(인천국제공항공사 내규)

<문제점>

- 임시·일회성 통행 차량들의 경우 출입증 발급과 반납 등의 절차로 인해 통행에 불편 초래

- 현재 차량통행 수가 일평균 3,000~6,000대에 달하여 실질적으로 차량 통제가 곤란하고 통행 혼잡만 초래

<개선방안>

- 인천국제공항공사 내규의 출입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불편을 최소화

- 출입증 없이 자유무역지역의 출입 허용 범위를 월9회까지로 확대하고, 회수 절차 간소화를 추진

6. 항만하역 작업시 정시간외 물품취급통보 의무 폐지

<현 황>

- 현행법상 공항만에서 정상 근무시간 외에 하역작업 등을 할 경우 감시 목적상 미리 세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 신고누락시 과태료 처분에 처하고 있음
- * 관세법 제321조와 동법 시행령 제275조(임시개청 및 시간외 물품취급)

< 문제점 >

- 통상 하역작업은 오전 8시부터 시작되어 매번 정시간외 물품 취급 통보를 해야 하는 실정으로 번거로움 초래
- 또한 공항만세관의 감시부서가 CCTV 등을 통해 24시간 감시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 통보의 실익이 낮음

< 개선방안 >

- 항만 하역작업시 정시간외 물품취급통보 의무 폐지
 - 항만에서 선박으로의 선적이나 하역작업의 경우는 세관장에 대한 통보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

VI. 환경규제 개선

1. 반도체 기존공장의 구리공정 전환 관련

<현 황>

- 반도체산업의 구리 공정 도입 추세에 따라 현재 가동 중인 이천 하이닉스 공장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구리공정* 전환 필요

* 메모리 반도체로 초고밀도(50나노급 이하, 현행은 60나노급) 반도체 제조시 구리공정 필요(비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구리공정 기도입)

<문제점>

- 이천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입지가 제한 (사용 공정 전환 포함)

* 특정수질유해물질 : 구리, 납, 비소, 카드뮴, 6가크롬 등 19종(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개선방안 (향후 계획)>

- 동 사안의 처리방안에 대해 환경부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별도 발표 예정

참고**하이닉스 공장증설 관련 정부결정(07.1.24) 요지**

- 제1공장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에 금년 중 즉시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적극 지원

- 08년 착공이 예상되는 이천지역 제2공장에 대해서는 팔당호 수질 보호를 위한 구리배출시설규제 필요성 및 자연보전지역내 대규모 공장설립시 우려되는 부작용을 고려할 때,
 - 현재로서는 환경법령 및 수정법령 개정을 통한 증설 허용이 곤란하며

 - 하이닉스가 국내 여타 지역에 대한 투자 희망시 관련 지자체와 협력하여 대체 투자지역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적기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 한편, 정부는 상수원 주변 지역 입지규제와 관련하여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 상수원 주변지역의 공장입지에 대한 규제방식의 개편작업에 착수

2. 국내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개선

<현황>

- 국내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는 연료별·차종별 농도규제 방식으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의 제작·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0] 제작차배출허용기준

<문제점>

-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고려 미흡
 - 정부가 제시한 유예기간 이내 기술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은 생산중단이 불가피하여, 이에 따른 공장해외이전, 고용불안, 지역 경제 위축 등의 문제 야기
-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유인체계의 부재
 - 현행 규제 방식은 기준을 초과달성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으며 기준 미달 차량에 대해서만 규제

<개선방안>

- 캘리포니아주의 평균 배출량 제도(FAS)* 도입

* FAS (Fleet Average Standard) : 제작사에게 다양한 배출허용기준을 허용하여 유연성을 부여하되, 제작사는 전체 자사 판매차량의 배출량 평균이 평균배출량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제작사는 정부가 제시한 기준(FAS)을 충족시키는 범위내에서 다양한 배출등급의 차량을 자유롭게 생산
- 기준(FAS) 이하인 제작사는 감축실적만큼 Credit을 보유하여, 향후 기준 초과시 활용(기준 초과시 Credit을 구매하거나, 금전적 벌금을 납부하여 생산 유지)
- ※ 한미 FTA 자동차 분과 협상에서도 '09년부터 평균 배출량(FAS) 제도 적용 합의

3.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제도 개선

<현 황>

-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제도
-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휘발유 자동차 대비 환경오염 부하요인이 큰 경유자동차와 160m²이상의 유통·소비 부문의 시설물을 부과대상*으로 함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동법 시행령 제4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의 범위등)

※ 부담금 산정기준 = 기본부과액(20,250원)×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부과금산정지수

(예) 산타페 2.2 : 매년 62천원 (20,250×1.25×1×1.53×1.599)

<문 제 점>

- 경유차에 부과되는 부담금의 오염원인자 부담원칙 구현 미흡
-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부과에 '06년 이후 강화된 제작차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와 그 이전 생산·판매된 경유차간 사회적 오염비용 감소요인이 반영되지 않음

<개선방안>

-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개선

* 연구용역결과('07년 6월)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 강구

4.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제도 합리화 방안 마련

<현 황>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자원재활용법)에 의거, 재활용 의무생산자는 폐기물을 ①직접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②재활용사업공제조합(공제조합)에 가입, 분담금을 납부하여 재활용의무를 이행
 - 정부는 품목별, 포장재별 하나의 공제조합만 인가(법령상 복수설립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재활용의무 생산자는 폐기물을 공제조합이나 위탁기관에 위탁·처리
 - ① 생산자 → 위탁기관(의뢰)
 - * 재활용 의무이행 계획서 등 서류를 생산자가 직접 작성·제출
 - ② 생산자 → 공제조합(가입) → 위탁기관(의뢰)
 - * 공제조합이 가입자(생산자)를 대행하여 서류를 작성·제출

<문제점>

- 위탁기관 의뢰시 생산자에 대한 직접 서류 작성·제출의무 부여로 공제조합 가입을 유도하는 결과
- 품목별·포장재별 하나의 공제조합만이 존재하여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고,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재활용처리업체의 선택권 제한

- 다수의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여러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불편 초래
- 가격경쟁을 통한 분담금 인하 유인이 부족하고, 재활용의무 생산자 및 재활용처리업체의 선택의 기회 제한

<개선방안>

- 서류 작성·제출 의무 관련, 위탁기관 및 공제조합간 실질적 차이가 없도록 서식 작성·제출 절차 간소화
- '07년 3/4분기 중 용역을 거쳐 자원재활용(EPR) 시장의 발전 및 공정거래질서를 감안하여 개선 방안 마련

5. 건설폐기물 처리 신고 중복 개선

<현 황>

- 사업장에서 발생·배출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나, 건설폐기물의 경우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건폐법)에 의거 재활용·처리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및 동법 시행령 제6조(폐기물의 처리기준)

※ 건폐법 제2조(정의) 및 동법 시행령 제9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문제점>

- 사업자에게 이중 신고 부담 발생

- 폐석고보드, 폐타일, 도자기류 등은 주로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에서 발생하지만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아,
 - 사업자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석고보드 등을 재활용·처리하고자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및 건폐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를 해야 함(신고의무 2종)

<개선방안>

- 폐석고보드 등의 재활용 촉진 및 사업자의 이중 신고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폐석고보드 등을 추가(신고의무 1종)

* 건폐법 시행령 [별표1] 건설폐기물의 종류 개정

6. 환경친화기업 지정시 요구되는 배출허용기준 조정

<현 황>

- 오염물질의 현저한 저감, 자원 및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환경경영체제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장에 대해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
 -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요건은 실제 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 대비 먼지 50% 이하, 황산화물 60% 이하, 질소산화물 70% 이하
 -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의2 (환경친화기업의 지정 등)
 - ※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운영규정 제5조 (환경친화기업 심사 및 지정)

<문제점>

- 환경오염방지시설의 효율과 여유율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함

<개선방안>

- 환경친화기업 지정시 요구되는 배출허용기준(지정요건) 합리화
 - 환경친화기업 지정시 적용하는 배출농도 강화기준은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에 반영하여 개정('07.7)
 - 대기분야 황산화물은 60%이하 → 80%이하, 질소산화물은 70%이하 → 90%이하로 조정

VII. 기타 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한 지원방안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기간 연장

<현황>

- 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현황

- 소득세 및 법인세 : 4년간 50% 감면
- 취득세 및 등록세 : 2년간 면제
- 재산세 : 5년간 50% 감면

<문제점>

- 창업자는 자금조달 어려움* 등으로 2년안에 공장설립 등을 완료하기 어려워, 취득세·등록세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

* 산집법(13조의5)은 이를 감안하여 4년 이내 공장설립을 완료토록 하고 있음

- 특히, 영세창업기업은 초기에 임차공장으로 운영하고 창업 3~4년 이후 자가공장을 취득하므로 영세기업의 경우 세제 혜택을 못 받는 형평성 문제 발생

* 자가공장 확보율(중기중앙회, %) : (1년)17.4→(2년)38.5→(3년)37.1→(4년)49.6→(5년)51.9

<개선방안>

-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등록세 감면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2. 대불산업단지내 전기의 순간정전 방지

<현황>

- 서남권개발 및 중국·동남아 등 시장진출을 위한 전진기지 구축을 위해 전남 영암군 일원에 대불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
 - 최근 조선업종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분양률은 95% 이상 수준
 - * 대불 국가산업단지(조성기간 : 89년 ~ 97년)
 - 분양면적 : 358만㎡ / 입주기업 : 212개사 / 고용인원 : 2,696명

<문제점>

- 대불산업단지에서 매년 10회이상 순간정전이 발생하여 제품의 불량률이 급격히 증가
 - 일부 기업은 전체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어 막대한 작업손실 발생
 - * 대불산업단지내 순간정전 현황(대불산단내 K기업 제출자료) :
(02년) 9회 → (03년) 9회 → (04년) 10회 → (05년) 26회 → (06년) 13회
 - 최근 대불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순간정전 발생빈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개선방안>

- 한전에서 대불산업단지내 대한 순간정전 발생빈도를 최소화
 - 한전은 건설중인 송전선로를 적기에 준공(08.1월)하고,
 - 대불공단의 송전선로에 피뢰기 조기 설치(08년중)
 - * 낙뢰가 순간정전 발생의 중요요인중 하나임

3. 기업의 자연재해 대비 시스템 구축방안 강구

<현 황>

- 기업의 공장건물·기계설비 등도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 위험에 노출

* 연도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재해피해 규모

(단위 : 개, 억원)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피해업체수	10,541 (9,055)	22,513 (15,493)	1,584 (517)	3,320 (2,030)	2,382 (1,745)
피해금액	5,959 (3,055)	9,106 (3,371)	1,277 (126)	2,395 (1,140)	1,132 (335)

* ()안의 숫자는 중소기업중 소상공인 피해규모, 자료 : 중소기업청

- 이러한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부 기업은 민간 보험회사의 화재보험 가입시, '풍수해 특약'을 선택하여 보상
- 자연재해로 피해발생시, 정부는 중소기업의 복구자금을 융자 지원(이자율 : 4.4%, 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시 : 3%)
- 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원 한도내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

<문제점>

- 기업의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 대응 및 보상체계가 미흡
- 일부 기업은 민간보험(풍수해특약)을 가입하고 있으나 보상규모가 적고(피해규모 대비 2~17% 수준), 피해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원천적으로 가입을 제한하고 있어 활성화되는데 한계

<개선방안>

- 기업이 보유하는 공장건물·기계설비 등에 대해 자연재해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점검 및 개선방안 검토
 - 07년 하반기에 관계부처(예산처, 소방방재청, 중기청)에서 공동 연구용역 실시
 - 자연재해 피해보전을 위해 선진국 사례, 민간보험 운영실태, 기업 실태조사 등을 연구하여 추진방안 강구

4. 불합리한 수돗물 공급조건 개선

<현 황>

- 현행 수도법에는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수돗물 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

* 관련규정 : 수도법제23조제1항

<문제점>

-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전용공업용수 요금을 사용량 기준으로 부과하지 않아 수익자부담원칙에 반하며, 기업에 부담 초래

* <사례> A시의 경우 전용공업용수 급수량을 신청(A시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하도록 하고 계약량을 초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할증 요금을 부과하되, 미만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도 당초 계약량분의 요금을 부과

- 기업의 물 절약에 대한 인센티브가 되지 않고 오히려 기업의 비용 부담, 사용량 변경 신청의 번거로움 등을 초래

<개선방안>

- 수자원공사의 요금체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수돗물 가격을 산정하도록 조례 개정을 유도

5. 경제자유구역내 국내기업에 대한 출총제 예외 인정

<현 황>

- 정부는 동북아 경제중심 프로젝트 주요 실천사업 중의 하나로 경제자유구역을 추진중
 - 03년부터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3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여 개발중
 - 외국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외투기업에 대한 외환거래, 노동 등의 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혜택을 부여

<문제점>

- 외국기업의 경우 투자결정시 국내 대기업·중핵기업과의 입지적 연계, 전후방 연관업체의 접근성을 중요시함에도 불구하고
 - 국내 대기업이 경제자유구역에 투자시 출총제 제한으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대기업의 입주가 제한되어, 외투기업 유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개선방안>

-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및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 인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제17조)

6. 기술우위 SW 개발자 우대를 위한 정부계약제도 개선

<현 황>

- SW사업시 과도한 저가입찰을 막고 기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경부 회계예규 2200.04-158-1)을 제정하여 운영
 - 지식기반산업 등에 있어서는 가격보다는 기술 우위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기술능력 평가비중을 최대화(기술 대 가격은 80 : 20) 하여 평가

<문제점>

- 이를 통해 덤핑입찰의 사례는 감소하였으나, 제안가의 하한을 60%까지 허용함으로써 여전히 가격이 낙찰에 큰 영향
 - *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단순합산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
- 전문지식 및 기술력 중심의 평가를 유도한다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정의 근본 취지가 퇴색

<개선방안>

- 협상적격자 선정방식을 개선하여 가격보다는 기술우위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 일차적으로 기술평가만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가격 평가를 실시하여 기술과 가격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
- * 제안서평가 점수(80점)만을 기준으로 동 점수의 일정비율(예: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7. SW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 개선

<현 황>

- SW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을 준용하여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정통부 고시)’ [별표 20]에 명시
 - 이는 SW 개발비 산정시 주요 기준으로 사용

<문제점>

- 현행 기준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SW산업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
 - 따라서 SW사업 내용상 컨설턴트 및 그에 준하는 고급 인력 투입이 이루어지지만 이에 대한 기준이 없어 합리적 개발비 산정이 어려움

<개선방안>

- SW 기술자의 전문성, 직무수행 경험 등을 종합 판단할 수 있는 등급분류 체계 개발 추진(중장기)
 - SW기술인력의 단계별 교육과정 체계화, SW기술자 신고 제도 도입 및 「SW기술자 경력증」 발급 추진(~08년)
 - SW기술분야별 실무 중심으로 자격종목 개편 추진(09년~)
 - 이를 토대로 등급분류 체계 개발(10년~)

8. 윈도우 비스타 문제해결 비용의 과도한 IT업계 전가 방지

<현 황>

- 윈도우 비스타 출시에 따라 기존 윈도우 환경에서 이루어졌던 인터넷 뱅킹, 전자정부 등 각종 공공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
 - 이의 유지보수 비용을 S/W 개발업체(IT업체)가 모두 부담

<문제점>

- 윈도우 비스타의 서비스 장애를 막기 위한 호환성 작업과 테스트 비용이 경우에 따라서는, 초기 개발비용의 70%까지 발생하고 있으나, 이의 비용을 S/W 개발업체가 모두 부담
 - 기존 제품의 업그레이드와 비교, 비스타용 제품 개발시 적게는 30%, 많게는 70%의 인력이 투입
 - 이에 대한 비용을 정부기관(사용자)은 인정하지 않음

<개선방안>

- 원칙적으로 윈도우 비스타 호환성 작업은 유지보수 대상(무상)
- 다만, 개별 사안에 대하여는 현행 SW사업대가기준에 따라 판단

9.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시 면허세 비과세

<현 황>

- 전자상거래법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신판매업자가 신고된 사항을 변경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의무화

* 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 관할구청으로부터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을 때 면허세(수시분)를 납부(면허세는 건당 45,000원)

* 근거 : 지방세법 제161조

<문제점>

- 최초 신고 뿐 아니라 분실 및 변경 신고시에도 동일한 면허세(수시분)를 납부

- 따라서 인터넷 서버변경, 상호·주소 변경 등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면허세를 부과하고 있어 부담 초래

<개선방안>

- 상호, 서버 변경 등 면허의 본질을 변경하지 않는 변경 사항에 대해 면허세 비과세 추진(지방세법 시행령에 반영)

10. 중소기업 사업전환 활성화를 위한 R&D 자금 지원

<현 황>

- 중소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경쟁력이 저하된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법」 제정 시행(06.9.4)
 - 사업전환자금(07년 1,000억원), 컨설팅자금(07년 10억원) 등 지원

<문제점>

- 사업전환 추진기업은 전환업종의 경쟁력확보를 위해 제품개발 능력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
 - * 신규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갖추어야 될 능력분야: “제품개발능력·기술력(60%)”, “마케팅능력·판로개척(21%)” 등의 순으로 조사(’07.2 사업전환 승인기업 설문조사)
- 사업전환 컨설팅, 자금 등의 지원은 가능하나, 전환업종에 대한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은 전무

<개선방안>

- 사업전환 승인기업 대상, 전환업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품개발에 필요한 R&D 지원
 - 07년 시범사업추진(소요예산 30억원)후 성과를 분석하여 점차 확대

11.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부설연구소 설립 허용

<현 황>

- 현행법상 개별기업의 부설연구소 설립신고는 가능하나 비영리 법인, 금융기관 등은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불가*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15조 1항 1호

- 부설연구소 설립신고시 조세·병역특례, 국가기술개발사업 참여 등 혜택

<문 제 점>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부설연구소* 설립이 제한되어, 자체 기술개발 능력이 부족한 개별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는데 어려움

* 회원사를 위한 기술개발, 연구기획 등 공동기술개발 업무수행

<개 선 방 안>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공동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부설연구소 설립 허용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개정

1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조정제도 개선

<현 황>

- 중소기업의 직접적인 보호제도로서 고유업종제도와 단체수의 계약제도가 07.1월부터 완전히 폐지
- 다만,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당해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한 악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중기청의 ‘사업조정제도’에 의해 대·중소기업간 이해 조정
 - * 사업조정제도(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법률 제31~34조)
 - 대기업이 특정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당해 업종 중소기업 상당수가 경영안정에 현저한 악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대기업 사업의 인수·개시를 연기하거나 생산시설 축소 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하는 제도

<문제점>

- 대기업과 중소기업계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될 경우, 사업조정을 통한 자율적 합의 또는 사업조정심의회 결정에 어려움

<개선방안>

-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제도 강화는 바람직하지 않으나
 -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해 사업조정제도는 필요
- 이러한 사업조정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 연구용역을 통해 외국사례 등을 검토하여 사업조정 신청요건, 조정절차, 조정명령의 내용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08년까지 마련

13. 컨설팅과 중소기업 지원정책 연계시스템 구축

<현 황>

- 중소기업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체질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컨설팅지원사업 추진중
 - * 쿠폰제 경영컨설팅 지원(07년)
 - 예산규모 : 200억원, 지원대상 :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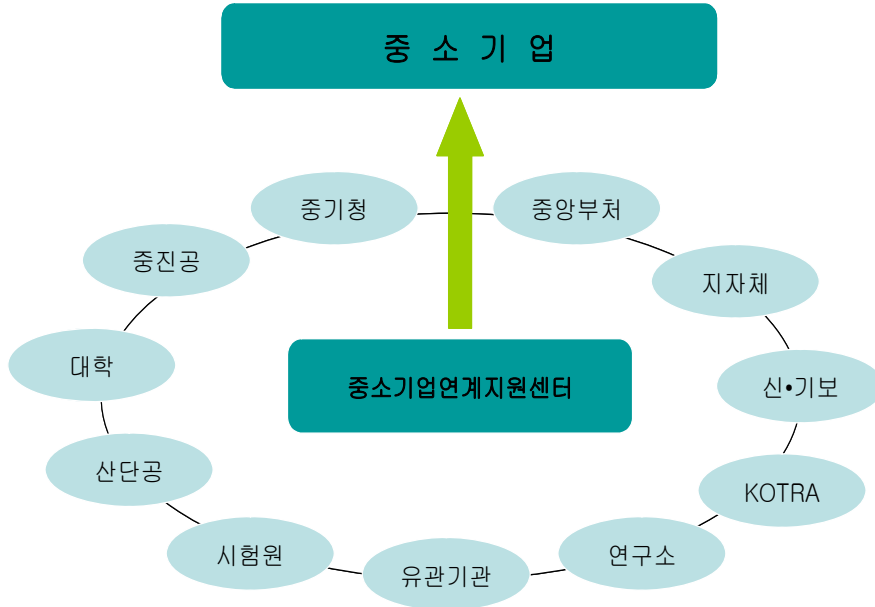
- 컨설팅내용 후속수행을 위한 연계지원체계가 구축되지 못하여,
 - 단편적인 컨설팅 지원만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영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한계
 - * 컨설팅 수혜기업의 74.3%가 컨설팅에 따른 연계지원 희망 (05년 컨설팅백서)
 - 컨설팅 결과로 나타난 개선과제와 실행계획을 현장경영에 후속 지원 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하여, 컨설팅의 효과에도 한계

<개선방안>

- 쿠폰제 컨설팅사업과 다른 정책간 연계 운영
 - 우선 컨설팅사업과 중소기업청 소관사업(자금지원, 기술지원 등)과 연계 후, 타부처 사업으로 확대 추진
- 중소기업의 컨설팅 애로상담 및 지원을 위해 지방중기청에 「지역별 컨설팅 애로상담창구」 및 연계지원센터 설치·운영

<참 고> 컨설팅-지원체계간 연계네트워크 구축

< Business Link 개념도 >



* 중소기업연계지원센터 : 중소기업청 지방청

<지원기관 · 지원분야 Matrix>

구 분	창업 지원	연구 개발	사업 화	기술 지원	마케 팅	국제 협력	입지	인력 공급	교육	경영 자문	정보 화	자금 (보조)	자금 (투자)	자금 (융자)	비고
정부 각 부처															
중소기업청	○			◎	○	○				○	○	◎			
지방자치단체					○		◎						△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	○					○	
KOTRA					○	◎			△				△	△	
무역협회					○	◎			△				△	△	
산업단지공단							◎		○					○	
테크노파크	◎	◎	○				○		△						
한국수출보험공사														○	
한국표준협회				○					◎						
한국디자인진흥원		○	◎												
한국생산성본부				△					◎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					○						
보증기관														◎	

* 범례 : ◎ : 연계효과 양호, ○ : 연계효과 보통, △ : 연계효과 미약

14. KS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한 교육비용 부담 완화

<현 황>

□ KS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해서 최고경영자, 간부, 담당자들이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음

* 관련법령 : 산업표준화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 특히 KS 인증 심사나 사후 심사에서 교육이수 여부가 평가 항목으로 적용됨에 따라 업체는 관련 교육이수가 필요

* 교육점수 반영비율 6점/100점, 80점 이상이면 합격

<문제점>

□ 산업표준화법에서는 해당 교육을 한국표준협회 1개 기관에만 위탁하고 있어 기업의 교육 선택 기회가 제약되고 있음

*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44조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 교육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

○ 또한 최고경영자교육 등 일부 과정은 교육비가 비싸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

* 표준협회 교육비용(예) : (하계CEO포럼) 260만원, (CEO품질포럼)150~170만원

<개선방안>

□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 교육을 다양하게 제공하여 기업이 보다 저렴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개선

○ 교육 시행 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표준협회의 교육도 다양화

15. 기술이전시(정부연구소→기업) 경상기술료 방식 활성화

<현 황>

- 산·연 공동기술개발 이후 개발 기술은 연구소에 귀속, 다만 기술이전시 공동기술개발 참여 기업에 우선권 부여

* 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제24조

- 기술이전시 기술료 액수 및 지불 방법, 후속기술지도 문제 등은 연구소와 기업 간 계약의 문제

* 기술료 지불 조건 : 선금금 방식, 경상기술료 방식 등

<문제점>

- 기술개발 후 사업화와 관련, 연구기관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필요
 -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운영시 연구소가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원해줌에 따라 사업화 성공률 높음
- 또한 기술이전시 기술료의 선금금 지급 방식은 기업에게 초기 비용 부담이 됨

<개선방안>

- 이전된 기술의 사업화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경상기술료 방식’ 활성화 유인
 - 기술이전 방식·업무에 대한 지침으로서 ‘업무매뉴얼 및 표준계약서식’을 제작하여 대학·연구소에 배포
 - 경상기술료 활성화를 위한 경상기술료 산정, 징수 등을 대행하는 ‘라이센싱 매니지먼트’ 사업을 시범 실시

16. 기업이 R&D과제를 위한 신규인력 채용시 내부인건비 지급기준 명확화

<현 황>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R&D 출연금 제도에 있어 민간기업의 내부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 (과기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대통령령)

* 내부인건비 : 주관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당해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비용지급 불가)

** 외부인건비 : 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 지급되는 인건비(⇒비용지급)

<문 제 점>

- 기업이 R&D 과제추진을 위해 신규기술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내부인건비 지급이 불분명하여 각 기관마다 내부인건비 지급 여부가 상이

<개 선 안>

- 중소기업이 R&D 과제추진을 위해 신규 연구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내부인건비 지급기준 명확화(과기부에서 기준 명확화)

VIII. 기업법제 선진화

도산법제 선진화

1. 도산절차상 신규지원자금에 대한 우선순위 인정

<현 황>

- 통합도산법상 신규지원자금은 공익채권으로 취급되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만, 회생담보권자에 대해서까지 우선순위가 인정되지는 않음

<문제점>

- 신규지원자금에 대해 공익채권으로서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금융기관의 신규자금 유입에 한계
 - 금융기관은 우선변제권 인정만으로는 신규자금을 대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 또한 회생담보권의 담보 목적물의 가액이 회생담보권의 가액을 상회하여 추가담보 여력이 있는 경우에도, 후순위 담보권 확보를 통한 신규자금을 공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 한편, 담보 목적물의 예상 낙찰가액이 회생담보권 가액을 상회하는 경우 담보권 순위가 하락하더라도 회생담보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음

- (필요시) 회생담보권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아래의 방안 검토
 - i) 회생계획에서 담보권 순위하락을 수용하는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변제조건(변제기, 이자율 등) 등을 우대하는 방안
 - ii) 회생담보권자의 동의 등을 요건으로 설정
 - iii) 법원의 결정에 의해 선순위 담보권을 인정하도록 하되,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이의제기 권리 부여

<개선 방안>

- 회생담보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규자금 제공자에 대해서는 회생담보권에 우선하는 선순위 담보권 (Super priority)을 인정
- 회생계획에서 담보권 순위하락을 수용하는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변제조건(이자율, 변제시기 등) 우대 방안, 회생담보권자의 동의 또는 법원의 결정을 요건으로 하는 방안 등 검토

2. 절대우선원칙 (Absolute Priority Rule)

<현 황>

- 절대우선원칙은 선순위 채권자에게 재산이 먼저 분배되고, 남은 재산이 있어야만 후순위 채권자에게 분배된다는 원칙
 - 채권자별 변제율을 결정하는 협상과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후순위 채권자 및 주주의 “버티기”를 봉쇄하여 채권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통합도산법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도입하는 것으로 절충 (법 제243조)
 - 파산시의 분배 몫 이상을 보장하는 원칙으로서, 청산가치 만큼은 우선순위에 따라 이해관계자 간 몫을 결정하고
 - 청산가치를 상회하는 계속기업 가치는 종전과 같이 협상에 의해 몫을 결정

<문제점>

- 절대우선원칙은 담보채권 우선의 일반 민사법 원칙을 도산법상 반영한 것으로, 담보권의 우선순위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동위험이 이자율에 가산되어 오히려 기업의 부담을 가중
 - 채권자간 및 채권자·주주간 협상 기간 등으로 인해 절차 지연이 초래되고, 후순위채권자 및 주주의 “버티기(hold-out)” 가능성 존재

<개선방안>

- 절대우선원칙의 도입

3. 자동중지제도 (Automatic Stay)

<현 황>

- 자동중지제도는 도산절차 신청 즉시 별도절차 없이 모든 채권 행사를 자동적으로 금지·중지시키는 제도

* 도산절차 신청후 법원의 개시결정 이전에 채권자들이 강제집행 등을 통해 경쟁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경우 기업의 회생가능성과 채권자간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

- 통합도산법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도산절차 신청후 보전 처분 명령까지의 기간 단축(14일→7일), 포괄적 금지명령제도 도입 등을 통해 보완 (법 제45~47조)

- 채무상환 기한을 일시적으로 유예받거나,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형사처벌을 유예받을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를 감안

<문제점>

- 보전처분 명령시까지 경쟁적인 채권회수, 임의변제 및 재산유출 등으로 인한 회생가능성 저하 및 채권자간 공정성 침해 위험 상존
- 또한 보전처분 시, 현실적으로 100% 보전처분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보전처분 소요기간 및 비용 허비 초래

<개선방안>

- 자동중지제도 도입

신탁법제 선진화

4. 신탁법상 신탁대상을 Negative System으로 전환

<현 황>

- 현행 신탁법 및 신탁업법은 신탁대상을 제한적으로 열거
 - 신탁대상을 금전, 유가증권, 금전채권, 동산, 토지 및 토지 정착물, 지상권·전세권·토지임차권 및 무채재산권으로 제한

<문제점>

- 신탁대상 제한에 따라 신탁제도의 탄력적 활용이 곤란하고, 새로운 유형의 신탁상품 개발을 저해
 -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종합신탁의 발달을 저해하고 있음
 - * 영미의 신탁제도는 신탁대상물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일본 또한 '05년 신탁업법 개정을 통해 신탁대상에 대한 제한을 폐지

<개선 방안>

- 신탁법·신탁업법상 신탁대상을 Negative System으로 전환
 -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신탁의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신탁대상을 확대

참고 1

신탁제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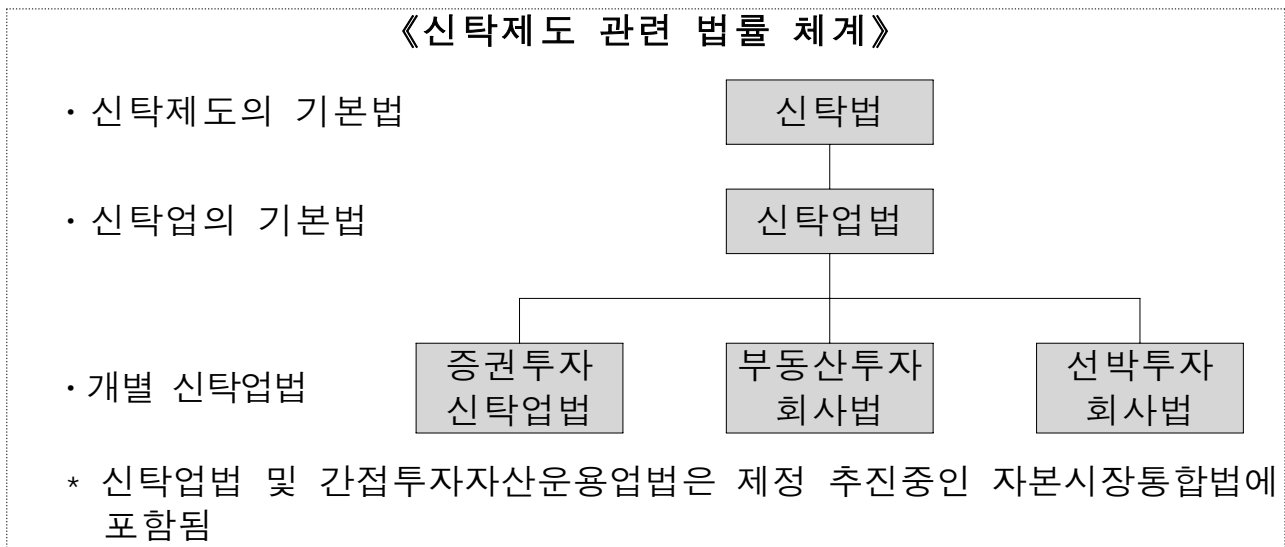
- 신탁제도는 영미법에서 유래한 제도이나 상사거래 특히 각종 위험이 예상되는 금융거래에서 유용한 수단*으로 평가
 - 영미 뿐만 아니라 유럽국가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신탁제도를 도입

《신탁제도의 장점》

- i) 도산위험회피기능 : 신탁재산은 위탁자 및 수탁자의 도산위험으로부터 분리됨으로써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
- ii) 조세편의기능 : 수익자에게만 과세되고 수탁자에게 이중과세되지 않음
- iii) 설계의 유연성 : 당사자간 계약에 의해 다양한 유형의 신탁이 가능

- 최근에는 미국, EU, 일본 등을 중심으로 신탁제도의 현대화를 추진중
 - 99년 EU는 유럽 신탁법 원칙을 발표하였고
 - 중국도 01년 신탁법을 제정
 - 영국은 00년 신탁제도 현대화를 위해 수탁자법을 개정
 - 미국도 97년 통일신중투자자법(Uniform Prudent Investor Act, '94년 채택)을 개정하였으며 00년에는 통일신탁법전(Uniform Trust Code)을 채택
 - 일본 또한 변화하는 거래관계 반영을 위해 신탁법 제정 이후 83년만인 '05년 신탁법을 전면적으로 개정

- 우리나라의 경우 '61년 신탁법 및 신탁업법이 제정된 이래
 재산증식기능 위주의 금전신탁을 중심으로 활용*하여 왔으며
 90년 이후로 증권투자신탁 및 부동산투자신탁이 활성화되기 시작
- 그러나, 신탁법은 '61년 제정 이래 실질적인 개정이 전혀 없었는 바,
 변화하는 거래관계에 대한 적극적 대처에 한계



5. 수탁자의 자기집행 원칙 폐지

<현 황>

- 현행 신탁법은 신탁사무를 수탁자가 직접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제3자 위임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문제점>

- 신탁재산 사무처리가 복잡화·전문화됨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사무 일체를 처리하기는 곤란하고 효율성도 떨어짐

<개선 방안>

-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전제로 수탁자의 자기집행의 원칙*을 폐지

* 미국의 통일신탁법전(Uniform Trust Code)은 자기집행의무를 폐지

6. 복수 수익자간 이해상충 해결규정 도입

<현 황>

- 현행 신탁법은 다수 당사자간 집단적 신탁관계를 예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집단적 신탁관계에 있어서의 복수 수익자간 이행상충 문제에 관해서는 규정이 미비

<문제점>

- 현행 신탁법은 다수 당사자간의 집단적 신탁관계를 예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분쟁발생시 해결비용이 많이 소요

<개선 방안>

- 집단적 신탁관계에 있어서 복수 수익자간의 이해관계규율 규정 도입

《복수의 수익자간 이해관계 규율방법(예시)》

○ 복수수익자 상호간 이해상충시 해결방법

① 수익자 상호간 이해상충

- 이종의 수익자가 있는 경우(예: 원본수익자와 수익수익자) 신탁설정시 수탁자에게 계약서에 각 수익권의 내용 및 이해 조정방법을 명시하고 수익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여하도록 규정

- 후발적으로 이종의 수익자가 생긴 경우 수탁자에게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예: 원본으로부터 수익에서의 이익을 이전하는 권한)을 규정

② 취소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

- 현행법은 수인의 수익자 중 1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면 다른 수익자에게도 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신탁의 안정성을 위해 일정비율 이상의 수익자(예: 수익자의 10%이상)가 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해 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규정

○ 복수수익자가 있을 때 신탁계약의 변경방법 등

- 일정비율 이상의 수익자(예: 수익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을 명시

담보제도 개선

7. 건축중인 건물에 대한 담보제도 개선

<현 황>

□ 건축중인 건물에 대해서는 마땅한 공시방법이 없어 담보설정시 양도담보를 이용

* 금융기관은 대체로 양도담보를 취득한 후 동 건물 완공 후 근저당권으로 등기

○ 그러나, 건축중인 건물은 공사 초기에는 동산으로 인정되나, 기성고가 증가하여 기둥·지붕 및 주벽이 이루어지면 부동산으로 인정*되어 양도담보권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

* 대법원 판례(1986.11.11, 86누173) :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이를 법률상 건물이라고 할 것이다"

- 건축중의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자는 공사 초기에는 동산 양도담보권자로 보호되나,

* 다만, 제3자가 선의취득하는 경우에는 보호되지 아니함

- 건물의 기성고가 증가하여 부동산으로 인정될 경우,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은 등기에 의해 공시되어야 하는 바, 등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선변제권의 주장이 불가

<문제점>

□ 양도담보권자의 지위가 불안하므로, 금융기관은 건축중인 건물을 담보로 인정하지 않거나, 담보가치를 낮게 평가

○ 중소기업 등의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자금 융통이 곤란

※ 반면, 건조중인 선박의 경우 저당권 설정을 인정(상법 제874조, 선박등기법 제2조 및 제3조, 선박등기처리규칙 규칙 제36조 내지 제40조),

<개선방안>

□ 건축중인 건물에 대한 저당권 등기제도 도입

○ 건조중인 선박과 같이 건축중인 건물에 대한 저당권 등기제 도입
(부동산등기법령 개정)